

2023년

#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CONTENTS

## I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 4

## II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 5

## III 학교보건사업 지원

1.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추진 및 평가 | 9
2. 보건교육 내실화 | 10
3.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13
4. 학교보건 담당자 역량강화 추진 | 15

## IV 학생건강관리 강화

1. 요양호 학생 관리 | 19
2.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23
3.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28
4. 학생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 33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39

## V 학교보건 보고사항

1. 건강검진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 52
2. 건강검진기관 선정 현황 | 52
3.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 53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 56
5. 2023학년도 보건교육 및 교과 선택 현황 | 57
6. 학생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 58
7.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 59
8.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언론취재] 보고 | 60

## VI 참고자료 및 지정서식

- 학생건강검진 승낙서 | 65
-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67
- 2023년 학생건강검진 비용 | 68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 69
- 문진표(초등학생용) | 70
- 문진표(중·고등학생용) | 71
-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72
-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 73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74
-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 75
- 학생건강기록부 | 77
-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 79
-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 80
- 보건교사 2인 배치학교 업무분장(안) | 82
- 2023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안) | 84
- 법정 감염병 신고의무자 및 감염병 종류 | 86

## VII 기타 학교보건 운영 관련 계획

1. 보건교육 기본계획(안) | 91
2. 비만 예방교육 기본 및 세부계획(안) | 98
3.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안) | 112
4. 당뇨 학생 지원계획(안) | 117
5. 응급처치 활동 지원계획(안) | 123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안) | 133

# I. 광주교육의 기본방향

##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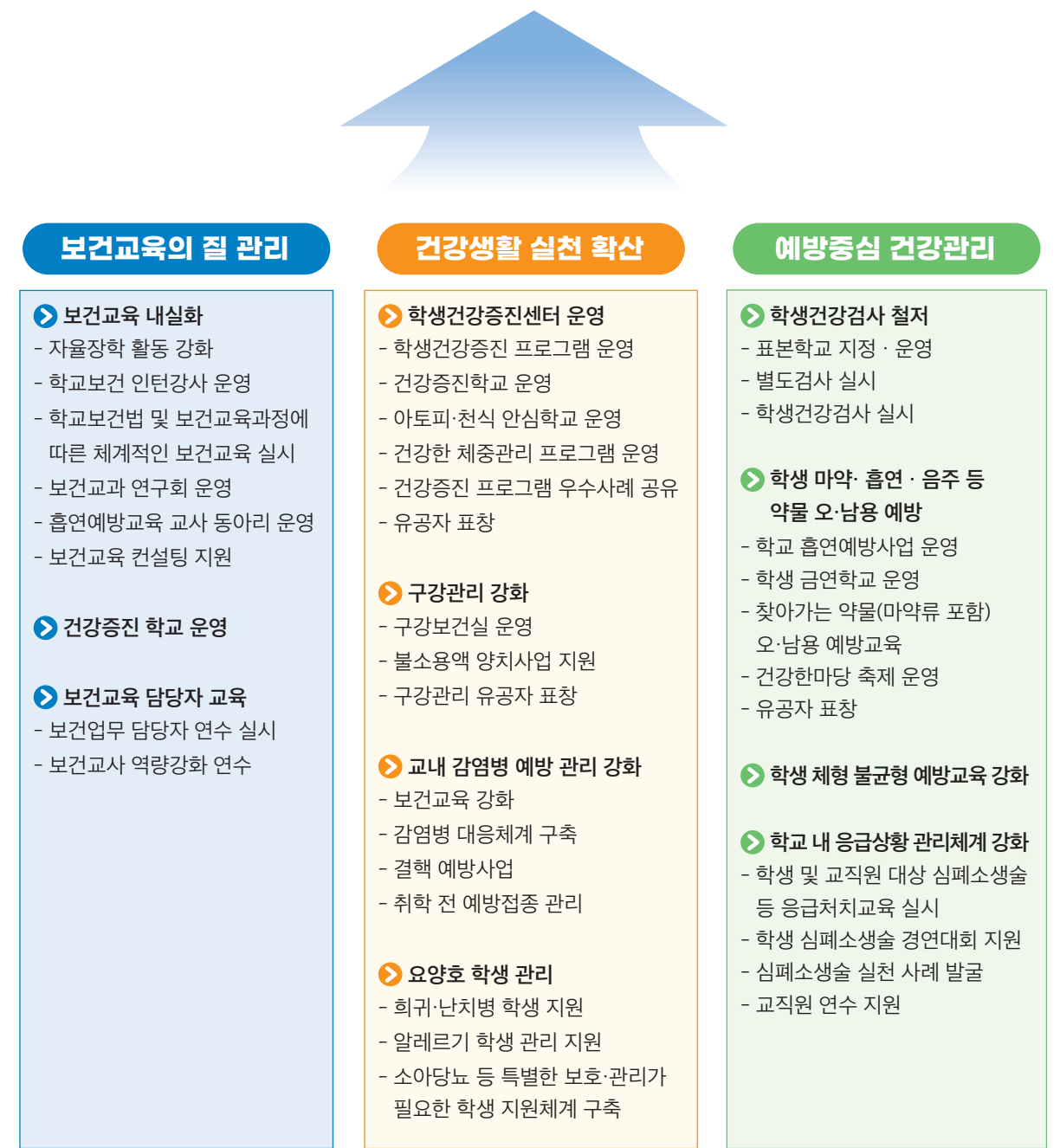
### 3대 역점과제

- 01** 다양성을 품은 **실력향상**
- 02** 미래로 가는 **SI교육**
- 03**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

# II.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학생건강 유지 및 증진을 통한

##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세계 민주시민 육성



## 학교보건사업 지원

- 1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추진 및 평가
- 2 보건교육 내실화
- 3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4 학교보건 관계자 역량강화 추진

# 01

##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추진 및 평가

### 기본방침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하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연계되도록 수립·추진

### 주요 업무

-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은 형식적·전시성의 계획이 아닌 실천 가능한 내용 수립
-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은 학교의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월간·주간계획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고,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
-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보건실 운영 내용 및 게시판 운영
- 학기 중에 시행한 사업은 학년 말에 평가하고 새 학년도 시작 전에 계획 수립
-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에 있어 어느 한 분야의 집중 관리만으로는 정책 추진의 효과가 크지 않은 바, 보건교육 및 건강검사 등의 기본적인 학생건강관리 정책 등이 조화롭게 추진
- 학생건강증진 관련 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표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학생건강증진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관리수준 향상

### 평가

- 학교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성취기준과 대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차기 계획 수립의 근거로 삼음
- 영역 : 학교보건운영 계획 수립, 보건교육, 보건실 관리, 학생건강검사 등 학교보건 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
- 월별, 분기별, 학기별, 학년 말 평가 영역을 구분하고 학년 말 평가에는 반드시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고려
- 평가환류 : 학교보건 영역의 평가 내용을 환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학교현장에 일반화하여 정보 공유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단위학교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 배치 등 지원활동 강화
- 보건수업 중 학생건강관리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추진 근거 및 현황

- 「학교보건법」 제9조(보건교육), 제9조의2(보건교육 등)
  - 성장기 학생의 신체건강 증진을 위해 발달단계에 알맞은 질병예방, 마약·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학교장의 보건교육 책무성 강화
- 2015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2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보건교육 및 '보건' 선택과목 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관련내용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초등학교) 10) 정보통신활용 교육, 보건 교육, 한자 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중학교) 6) 학교가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고등학교) 바)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 지원-교육청 수준의 지원) 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 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 - 2734(2022.12.12.), '2023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안 안내'
- 교육부 학교정책과 - 7232(2022.12.26.), '2023년 교육부 주요정책 안내'

## 주요 업무

- (단위학교)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참고 자료

1.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2.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3.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 교육정책 → 국가교육과정 → 2015 개정교육과정 →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선택교과 교육과정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학교보건

-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 1시간 기준 : 초(40분), 중(45분), 고(50분)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교육청) 교육감(장)은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대책 마련 및 이행
  - 교육감(장)은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을 시·도교육청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포함하여 안내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강화
  - 보건교사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수립·추진, 교재 및 교구지원, 교육자료 개발·공유 확대, 학교보건 보조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교사(필요시 보건 보조인력)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 보건교과(교육) 연구회 및 교사동아리 적극운영으로 우수사례 발굴·공유
  - ※ 학생건강정보센터, 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저작권재산권 유의)
  -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 보건교육실 설치 등 학생건강 관리 서비스 제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022년 보건교육 및 교과 선택현황>

(단위: 시간)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보건 교사 배치 학교수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현황									학년단위 17차시 이상 보건수업실시 학교수
			보건 과목 선택 학교수	학급당 보건수업 시수						평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	153	153	0	0.5	0.6	0.7	0.6	11.9	7.0	10.4	94	
중	93	93	29	4.8	5.3	3.2				9.7	29	
고	68	68	28	3.4	3.3	6.9				10.3	22	

<법령, 지침에 의해 반영되어야 할 보건교육>

기준시수	보건교육	심폐소생술		마약·흡연· 음주·약물 오남용
		학생	교직원	
17차시 (최소 1개 학년 이상)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이론교육(2시간) + 실습교육(2시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	10시간

## 03

#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기본방침

-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현황

- 학생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소아청소년기에 잘못된 형성된 불건강한 습관은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 학생건강 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 생활패턴으로 신체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문제 야기
  -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사업)이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 교육부 주도 건강증진학교 운영
  - '09년, 건강증진학교 국내 도입
  - '12~14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확대(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
  - '15~19년,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위한 연구학교 및 거점학교 운영
  - '20년, 시·도교육청의 건의에 따라 '건강증진학교' 시·도교육청 이양
  - '20년, 그간의 '건강증진학교' 운영성과 및 모델 등 정리 후 시·도교육청 안내



<참고> 건강증진학교의 특징

구분	특징
학교정책	교사, 학생의 참여하에 합의된 정책 결정(상향식 의사결정)
보건교육	지식, 태도 및 기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지역 사회(외부기관) 연계	외부기관이 학교의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학교 중심)

주요 업무

- 지역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지원
  - 기존의 교육부 지원 건강증진학교 운영사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지역별로 예산확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건강증진학교 적극 운영
    - ※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및 참고자료는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사업) 발굴·보급,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 단위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 교육과정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
-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 및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 학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지자체(보건소, 공공기관 등 포함),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학교 운영역량 강화 지원
  -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강증진학교 관련 커리큘럼 포함
    - ※ 연구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병행
  - 건강증진학교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교육과정 운영, '16년~)

04

학교보건 담당자 역량강화 추진

기본방침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추진

현황

- 질병의 치료와 예방, 마약·음주·흡연과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건강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로서의 학교 기능 필요성 대두
-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 업무분담 문제로 교직원 간의 갈등, 협력 미흡
- 학생 건강문제 다양한 변화에 따른 보건 수업방법 개선 요구

주요 업무

- 학교보건은 보건교육, 학생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활동이므로 효율적인 업무의 분담 및 관련 교직원 간의 협력체제 구축
- 36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39교), 학교보건 인턴강사 지원(130교) 등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보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의무제 실시
  -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이 지속적·계획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의무제 운영
  - 교원 연수 의무제는 2007학년도부터 전 교원에게 적용하며, 자율연수 및 자기개발과정의 직무연수를 제외한 전문성 향상 과정의 직무연수를 연간 최소 1학점(15시간) 이상 이수(기간제 교사 포함)



## 학생건강관리 강화

- 1 요양호 학생 관리
- 2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3 교내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 4 학생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 5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강화

# 01

## 요양호 학생 관리

### 기본방침

- 학기 초 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가진 학생을 파악하고 개별 면담과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통해 요양호 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응급상황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 난치병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난치병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현황

- 신입생에 대해서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재학생 건강이상자 발견에 소홀히 하는 경향
- 초1, 4학년 및 중·고 1학년 신입생의 건강검진 지연으로 인한 문제
- 일부 학교에서 형식적인 요양호 학생 명단 작성
- 가정에서 건강문제가 있다고 기록되어 온 학생 전체에 대한 개별면담 실시 후 요양호 학생을 선별하여야 하나, 담임교사 자료에만 의지하거나 대면 면담 등 적절한 건강상담 및 과정 미흡

### 주요 업무

- 학기 초(입학식, 개학식 직후) 가정통신을 통한 전교생 건강실태조사 실시
  - 전년도 학생건강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건강증진계획 및 요양호 학생 계획 수립
  - 1차 : 담임교사 면담을 통해 선별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보건실에 제출  
건강실태조사서는 반드시 보호자 날인을 받도록 하며, 가정에서 학생의 건강실태에 대하여 제출한 근거자료이므로 담임이 1년간 보관
  - 2차 : 보건교사는 제출된 학급별 건강이상자 전체를 상담한 후 선별하여 ‘요양호 학생 명단’ 작성 후 최종 결재권자 결재
  - 전체 학교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요양호 학생 명단 배부 및 학생 주의 사항, 유의 관찰방법, 교사 지도 조언 등 연수 실시로 건강이상 학생 보호 철저
- ※ 주의 : 요양호 학생 명단이 학생과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시기: 2023년 9월 이후
- 대상: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
- 지원방법 및 규모
  - : 보호자 신청,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에서 선정
  - : 2023년도 30명 대상 3,000천원 한도 지원 예정

○ 요양호 학생 기준

[ 기준 ]

- 계속적으로 보호 및 관찰을 요하는 질환을 가진 학생
-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완치된 난치병, 수술로 인하여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된 경우는 제외

[ 예시 ]

- 약이나 음식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있어 병원치료를 자주 받는 경우
- 현재 면역 억제제나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심혈관계 질환(심장병, 고혈압)의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학생
- 신장계통의 질환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 혹은 매일 투약 중인 학생
- 간(肝)질환으로 의사의 처방하에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B형간염 보균자
- 만성 소모성 질환(결핵, 당뇨 등)으로 규칙적인 치료 및 투약 중인 학생
- 뇌수술, 뇌전증(간질), 정서장애, 기타 심한 행동장애(틱장애)가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관리를 요하는 학생



###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1. 12.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831호, 2021. 12.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 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2. 난치병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3.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4.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난치병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제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3. 제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난치병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치료비 지원 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난치병 치료비 지원 한도는 학생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2.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식대. 다만, 상급병실료 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치료비 지원 절차) ①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하는 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난치병 학생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급 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난치병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 교육기회 균등 등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 행정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의사
2. 보건교사
3. 학부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831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

# 마약류·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 기본방침

마약·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반복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 현황

- 최근 다크웹·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거래 증가로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마약사범 증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문제 등이 심화되는 경향
- 학생들의 흡연·음주 문제와 약물의 오·남용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탈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증대
- 중·고등학생의 현재 흡연·음주율을 토대로 예방 교육 및 금연·절주 등 지원  
- 각급학교별로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 예방교육 실시
- 학생 대상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개발·보급('22년 6월)  
※ 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 학생용 교육자료, 교사용 지도서 등 홍보자료(총 21종) 교육부 개발·보급 완료
-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 표본조사(1,165교, '22년 11~12월)

◇ (우수 사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통한 예방교육 실시,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관련 정보 제공, 학부모 연수 지원을 위한 예방교육 지원단 구성·운영 등

◇ (지원 필요) 예방교육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강사 지원, 마약 예방교육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마약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연계 강화

## 주요 업무

### 가.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마약·흡연,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강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중·고등학교의 음주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내 주류 반입금지(술을 연상시키는 무알콜 음료 포함)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 교육(지원)청은 마약·흡연·음주 등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하여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예방교육 실시 조치
    - ※ 학교보건법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명시 「학교보건법」 제9조, '23년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점검서식에 마약류 교육실적 추가(서식 제6호)
-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공유 및 활용
  -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 시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해 공유하여 탑재된 약물남용 교육자료 적극 활용
    - ※ 학교급별 마약 예방교육 자료(총 21종) 탑재(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추천자료” 참조)
- 학교 내 마약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운영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 시 담당 교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조치('23년 상반기 중 개설 예정)
- 마약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예정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23년 「학교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모전」에 마약류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공모전 추진('23년 9월)
- 보건실 구비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투여에 의한 오·남용 예방

### 나.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홍보 강화

- 교사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사이버 연수과정(중앙교육연수원) 제공
-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보건소 등)
-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학생 연령대별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제공(연중)
  - \* (초등 저)올바른 약물사용 생활습관, (초등 고)담배·술·마약 등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등)메칠페니데이트 등 의료용 마약류, (고등)신종마약,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 다. 학교의 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 교육청은 관내 흡연실 설치 학교 현황을 파악하여 교직원의 교내 흡연이 학생들에게 목격되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 철저
  - ※ 지자체의 장은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운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 학교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및 외부인 대상 학교 내 흡연 금지 사전안내 및 종사자의 경우 외부 금연프로그램 이수 권고 등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2020.12.7.) 제도개선 참조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시행 2019. 11.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05호, 2019. 11.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발달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
3.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통학로”란 학생들이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등의 교육시설과 자기 집이나 유숙하는 집 또는 다른 교육시설 간을 오가는 통상적 이동경로에 있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
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시장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예방 교육) 학교장은 흡연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각 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① 교육감은 관내 학교의 학교장 및 교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흡연 예방) 학교장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제10조(흡연학생 관리)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칙 등 학교규정에 흡연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금연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흡연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하여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광주광역시시장과 협력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광주광역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도급업자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언론, 광주교육뉴스, 소식지, 소셜미디어 서비스,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 교육감은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사업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기본방침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학교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개정된 법령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
- 학생·학부모 대상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생활화

## 현황

- 「학교보건법」 제14조의3('16.3.2. 개정, '16.9.3. 시행)에 따라 「학생 감염병예방 1차 종합대책('16~'20)」 수립·추진
- 학교에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작·배포('16년 12월)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교육부 및 관계 부처 교육자료 활용 교육 시행
  -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환기 포함 학교시설 관리수칙 등
- 학생대상 예방교육 및 학부모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자료\* 제작·배포('17년 3월)
  - \* 학생 빈발 감염병 5종(인플루엔자, 수두, 볼거리, 수족구, 유행성눈병)에 대한 학생용 교육자료(유, 초·중·고 구분)와 학부모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용 리플릿(5개 국어 번역본 포함)
-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학교 관리자 및 담당 교원 대상, 교육청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 운영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수 형태(원격, 대면) 결정
-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역 관리 지침 마련·안내 실시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예방관리 안내('20년 3월 1판 마련 이후 '22년 12월 기준 8-1판 개정)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을 위한 나이스-예방접종통합 관리시스템 연계 완료('22년 5월~)
-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신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 추진
  - ※ '학생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 수립,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 '학생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 추가 개발 등

## 주요 업무

## 가.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 생활 속 기본방역 수칙 실천 및 교육·홍보 강화
  - 올바른 손 씻기 요령, 기침 예절, 환기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감염병 업무 담당자 연수 지속 추진
  - 각 시·도교육청은 산하 연수원에 교원 대상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운영
    - ※ 모든 교장, 교감,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가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 등을 연중 개설·운영하되, 당해 연도 연수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연수일정 등 조정 가능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대상 감염병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 연수는 효율성을 고려 교육부에서 주관교육청을 선정하여 실시 예정
- 가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가정 내 개인위생 관리 및 지도 협조, 감염병 유행 시 유의사항 등을 가정통신,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
    - ※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제작한 주요 국가 번역본 등 활용

## 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조치 철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 1. 1.)
  - ※ 감염병 분류체계, 신고기간, 보고기간 및 대상, 신고의무자 벌칙 규정(벌금) 등 개정
-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환자(의심자 포함) 관리 강화
  - 감염병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토록 하고, 학부모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 환자 발생시 조치내용 및 절차는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며,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등 출결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름
-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확인·관리 철저
  - 학교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지체없이 나이스(NEIS)를 통해 교육청에 보고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A형간염은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교육청은 관내 감염병 발생상황을 매일 확인하여 유행 여부를 판단하고, 나이스를 통해 교육부에도 전송
    - ※ 학생 및 교직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역학조사, 긴급방역 조치, 언론 취재 및 보도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별도 보고
- 학교 내 결핵 발생 시 방역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11.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563호, 2020. 11.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학교”란 제2호나목과 다목의 기관을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제2호의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및 교직원의 의무) 학생 및 교직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소요자원 및 예산  
4.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른 대응체계  
5.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배포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실시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지원

- ※ 필요시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결핵 관련 설명회 개최
-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소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통해 입소 전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해당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

### 다. 예방접종을 통한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학생의 예방접종력 확인을 통해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을 방지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 연계된 나이스-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 미실시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학부모에게 지속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보건소를 통해 미 실시 학생 대상 별도 접종 안내 추진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적극 홍보를 통한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 만 13세, 접종 기간 : 당해연도 9월 ~ 익년도 4월

-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감염병대책본부)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 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의 조직 구성 및 임무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염병 확산방지)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방역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입학식, 졸업식,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의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확산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확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홍보)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방법은 감염병 확산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1. 기침예절이나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마스크 착용방법  
 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63호, 2020.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4

# 학생건강검사 추진 및 결과 관리

### 기본방침

-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현황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 시 학생건강검사 조사결과 활용도 미흡
- 현행 학생건강검사 실시 방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및 검진기관 이용의 어려움에 따른 개선 요구도 증가
  -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는 일자를 지정함으로써 학생 몰림 현상 등에 따른 불편 및 형식적 검진 초래
- '20년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학생건강검사가 '21년 재개되었으며, 신체활동 저하 등의 사유로 비만 학생비율 등 증가
  - ※ 비만학생 비율 : '19(15.1%) → '21(19.0%)
- 학교에서 검진기관 선정 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함으로써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의 폭을 제한
  - \*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학생건강검사 현황

항 목	검사 대상 (특수·각종학교 포함)	실시 기관	검사 시기
신체발달 상황검사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당해학교	3월~7월
건강조사	초·중·고 전학년	당해학교	학기초 (3월중)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학교장이 선정하는 의료기관	연 중
별도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실시		

※ 시력검사는 필요 시 학교장의 판단하에 학교 자율로 시행

**주요 업무**

**가. 학교건강검사 추진**

- 각급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
  - ※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시행('20.3월~)> 건강검진 일부항목 삭제 및 추가, 문진표와 건강조사서 분리, 비만도 산출은 '체질량지수' 기준 산출방식으로 일원화 등
- 학생건강검사를 위한 검진기관 및 검진 시기(기간 등) 결정 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불편 최소화 노력
  - 건강검사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날짜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검진 추진
  - ※ 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제4항)
-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에 따른 건강검사 실시 시기 및 검사 결과 제출 기한 준수 철저
  - 건강검사는 3월부터 9월 중 실시하고, 검사 결과는 나이스(NEIS)를 통해 제출
  - ※ 학교의 장 → 시·도교육감 : 9월 30일까지, 시·도교육감 → 교육부장관 : 10월 31일까지
  - 2021~2023년 학교건강검사 표본학교

**(초등12교)**  
삼각초등학교, 연제초등학교, 광주효동초등학교, 광주동산초등학교, 봉선초등학교, 광림초등학교, 광주서초등학교, 화정남초등학교, 비아초등학교, 봉산초등학교, 마지초등학교, 송정서초등학교

**(중등16교)**  
양산중학교, 금호중앙중학교, 문흥중학교, 살레시오여자중학교, 광주무진중학교, 문성중학교, 광주동성여자중학교, 진남중학교, 대자중학교, 광주효광중학교, 윤리중학교, 수완하나중학교, 신가중학교, 운남중학교, 산정중학교, 선운중학교

**(고등16교)**  
광주과학고등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빛고을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동아여자고등학교, 광주동성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광덕고등학교, 장덕고등학교, 전남공업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 학생건강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속~)
  -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영·유아검진 및 성인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

**나.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적극 운영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 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및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검진결과 발견된 질환에 대한 조치 및 결과 회신 요청 시 충분한 상담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다. 학생건강검진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

- 건강검진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검진기관에 해당 민원에 대한 설명 및 적극 개선요청
- 학생건강검사의 적법한 운영 지원 및 현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검진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질(質) 관리 철저
  -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 검진 시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

※ 초등학교 구강검진 관련 참고사항(법률자문가 유권해석 결과)

- ◇ 「학교보건법」 제7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따르면(2007.12.14 개정) 초등학교 구강검진의 방법(출장검진과 내원검진 등 방법결정 및 검진비용 등)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임
- ▶ 따라서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세부방법은 구강검진을 제외한 일반검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구강검진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를 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지 않은 보건(진료)소에서의 구강진료는 검진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학교 건강검사에서의 '구강검진'은 미실시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검토(근거)자료 첨부
- 「학교보건법」 제7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이용 가능한 검진기관 부재 등)로 검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역 내에 검진기관의 부재 및 인근지역 이동 등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지역 내 보건(진료)소의 구강관리실 등에서 학생 구강진료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구강보건 관리를 할 수 있음
- ※ 일부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결과를 임의 특정기관에 DB화 의뢰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학교의 주의 요망

라. 실시 방법

-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 가) 검사 종류
    - (1) 신체발달 :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비만도 판정
    - (2) 건강조사 : 건강조사 설문지(학기초)
  - 나) 검사 시기 : 3월~7월 중
  - 다) 결과 처리
    - (1) 신체발달 : 담임교사는 검사결과를 건강기록부(NEIS포함)에 입력하고, 보건교사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2) 건강조사 설문지 : 담임교사는 설문지로 조사하여 보건(담당)교사와 협의, 건강이상자(요양호 학생) 파악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활용
- 건강검진
  - 가) 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나) 기관선정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 2개 이상을 선정 한다. 다만 2개 이상 선정 할 수 없는 경우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 할 수 있다.(검진기관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 검진방법 :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검진기관의 출장에 의한 검진을 할 수 있다.

라) 검진 결과 통보(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6항 별지 1호의5 서식, 1호의6 서식)

- (1)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결과 통보(검진 후 30일 이내)
  - (가)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
  - (나)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
- (2)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검진 후 30일 이내)
  - (가)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문진표 및 파일
  - (나) 학생건강검진 통계표 및 파일[참고자료 12 건강검사 결과 기초자료 참고]
  - (다)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및 파일

○ 별도검사

- 별도검사는 학생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검사인 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장은 해당 학생 전원 검사 실시
- 유소견자는 개인에게 직접 통보 또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조기치료

<별도검사 항목>

검사 항목	대상 학년 (특수·각종학교 포함)	검사기관	검사종류	검사비 (1인당)	검사 시기	비고
소변 검사	초 2, 3, 5, 6 중 2, 3 / 고 2, 3	한국학교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당, 단백, 잠혈, PH 간기능, 케톤체	1,450원	3~9월	특수 학교 무료
결핵 검사	고 2, 3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	디지털 흉부 X-선촬영	3,600원	3~9월	
구강 검사	초 2, 3, 5, 6 / 중 2, 3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부정교합 등	4,550원	4~6월	

- 소변검사는 성장기 아동의 소아 당뇨병 및 신장질환 등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 및 관리를 통한 성인기 질병 이환 방지
- 검사비는 해당 학생 전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정당한 절차에 의거 지불하며 검사 결과는 학생 건강기록부에 정확하게 기록
- 별도검사 시 출결 등의 사유로 미실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검사를 실시
- 결핵에 대한 중요성과 예방교육 실시하여 학생들의 결핵 이환율 감소 및 학생 스스로 질병예방은 물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X-선 검진 결과 유소견자(중증, 중등증, 경증)는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하고, 의사진단 결과 결핵소유자(타인에 감염)는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 등교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진단보류자 재검사 실시
- 건강검사의 기록
  - 예방접종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사(신체발달, 건강검진, 별도검사) 결과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건강기록부에 입력 및 관리 확인
  - 건강검사(신체발달상황, 건강조사설문지, 건강검진, 별도검사) 관련 자료는 1년 보관
- 검사결과 조치
  - 학교장은 건강검사 결과 소속 학생에 대하여 건강상담·예방조치 기타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 대책 강구
  - 건강검진 결과 학생 대한 조치 :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해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절한 조치 강구

###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통해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 응급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발생 피해의 최소화 및 학교 내 위기 관리 역량 강화

### 현황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생은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내 학생 “안전교육 담당부서 지침” 등을 참고하여 시행
- 학교장은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신설, 2018.5.29. 시행)
  -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보급('19.9.23,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6777)

### 응급환자 관리

-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 구성(예시)



○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 역할

<b>응급처치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교사 또는 보건업무 담당교사 등 2인 이상</li> <li>• 학교 내 초기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전까지의 응급처치 담당</li> </ul>
<b>환자이송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따라 이송담당 교직원의 부재를 예상하여 2인 이상</li> <li>• 담임교사(학년부장교사)는 이송반에 포함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이송에 반드시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li> <li>• 보건교사가 응급환자이송에 동행하는 경우, 보건실 관리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li> <li>• 보건실 대체인력은 보건실 관리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사전 숙지 대책반장이 명함</li> </ul>
<b>행정지원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학생 처치 및 이송 시 발생하는 치료비, 보상 등에 필요한 행정 조치 전반에 관한 사항 담당</li> </ul>

○ 응급상황 시 업무분장

구 분	환자상태가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	환자상태가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
상 황	의식장애·호흡곤란·약한맥박·심정지·다량 출혈·개방골절·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	단순외상·단순골절·고열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절차 및 업무 분담	<b>교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총괄</li> <li>•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li> </ul>
	<b>교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파악 및 지시·보고 등</li> <li>• 위기상황 처리에 필요한 조치</li> <li>• 대체 인력 배정</li> </ul>
	<b>보건 교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처치</li> <li>• 담임교사에게 통보</li> <li>• 병원 이송 시 동행</li> <li>• 관리자에게 처치 현황 보고</li> </ul>

<b>담임 교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연락</li> <li>•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li> <li>• 환자 병원 이송</li> <li>• 치료 후 보상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 연락</li> <li>• 학생 병원이송 안내 및 조치</li> <li>• 필요시 병원 이송</li> <li>• 관리자에게 사고경위 보고</li> <li>• 치료 후 보상 안내</li> </ul>
<b>생활 지도 (학년)부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서 및 생활지도</li> <li>• 학년 수업 결손 방지 지원</li> </ul>	
<b>이송 담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하게 병원 이송</li> <li>• 응급처치자는 차량운전하지 않도록 함</li> </ul>	
<b>행정 담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보상 및 제반 서류의 작성 등에 대해 협조</li> <li>• 병원 이송교사 등의 출장처리와 비용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처리</li> </ul>	
<b>기 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사고 기록지 작성 : 사건 날짜, 시간, 장소, 사고현황, 환자상태, 응급처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록</li> </ul>	

○ 응급사고 후 관리체계

- 응급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모든 사안은 『응급환자 기록지』 작성·보관
  - ※ 기록은 추후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작성·보관
- 담임교사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신청에 대해 학부모에게 정보 제공
- 환자 이송 시 동행 교직원은 출장처리
- 입원 등으로 학생이 학교 복귀에 기간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는 학생의 치료 경과에 대해 교감 및 보건교사에게 정보 제공

○ 응급상황으로 갈음하여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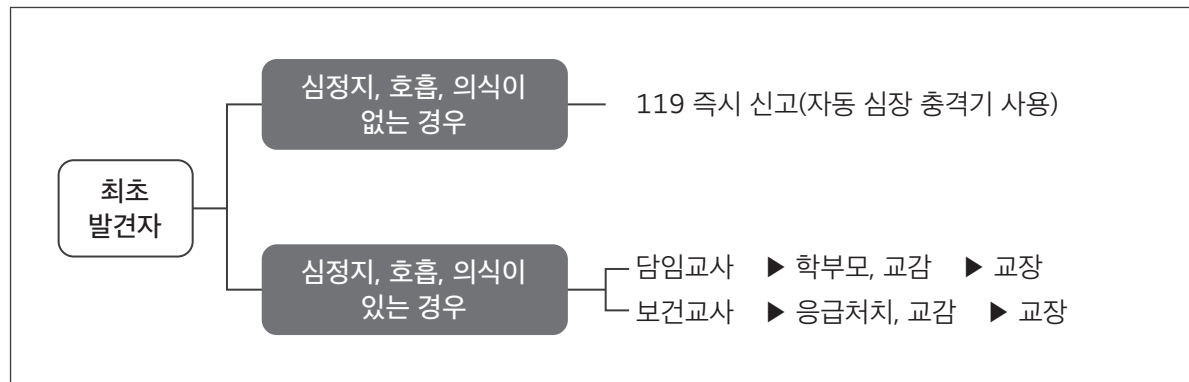
- 의식의 변화가 있고, 의식소실이 있을 경우 :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거나, 묻는 말에 횡설수설 하는 등 의식변화가 있거나, 두부에 손상이 있거나 구토 등을 보이는 경우,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 호흡이 없거나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 :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입술이 파랗게 변하거나 얼굴이 창백해 있거나, 현기증을 일으키며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경우
- 외과적 부상으로 출혈이 심하고, 외상부위가 오염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또는 안구 부상인 경우
- 척추 등의 부상으로 신체 부위에 감각이상을 보이는 경우
- 중등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경우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이상인 경우
- ☞ 평소에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고, 사안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에 따라 신속조치

○ 응급증상 분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항의 별표1)

1. 응급증상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③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④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체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⑤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⑥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상실 ⑦ 알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리지 반응 ⑧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⑨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에 준하는 증상	①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②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③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④ 출혈 : 혈관손상 ⑤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 ⑥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⑦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응급환자 최초 발견자는 일차적으로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 보건교사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관리, 초기 상황을 보건교사에게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
- 2) 보건교사는 응급환자 관리체계 가동
  - 보건교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조치하고, 상태여부에 따라 신속한 응급구조 요청
  - ※ 응급처치 연수 이수 교사는 보건교사를 도와 응급처치에 참여
- 3)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연락
  - 담임교사는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즉시 학교나 이송병원으로 오도록 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취함
- 4) 담임교사(보건교사)는 교감(학교장)에게 상황보고 후 현장 보조
  - 담임교사(보건교사)는 환자 발생 상황에 대해 교감에게 보고
  - 교감은 응급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할분담·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체계 응급환자 관리 대책반을 지휘하고, 학교장에게 상황을 보고 및 보건교사, 담임교사의 부재에 따른 조치
  - 담임교사는 응급현장의 보건교사를 보조하고, 보호자 및 학교담당자와 연락을 유지하며 이송병원 및 환자상태 변화 등에 대해 상황 전달
- 5) 병원이송
  - 구급차에 인계하여 환자 이송
  - 담임교사(또는 학년부장교사)는 의료기관까지 동행하여 학부모에게 인계 전까지 의료 기관에서 보호자 역할을 대행 ※ 환자 상태가 위급한 경우 반드시 보건교사 동행
- 6) 병원이송까지의 과정 기록 및 보고
  -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상황을 응급환자 기록지에 따라 자세히 기록·보관
  - 사고발생 최초 발견교사(담임, 현장임장교사 등) 사안 발생 관련 내용 기록

○ 응급환자 신고 및 보고체계



- 1) 최초 발견자는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
- 응급환자 최초 발견자는 환자 상태가 심정지, 호흡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요청 및 심장 제세동기 사용

**주요 업무**

**가.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년 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교육계획 수립 시 7대 안전교육 내용 체계안 적극 반영
  - ※ 구체적인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교육부 내 안전사고 관련 업무담당 부서 지침에 따라 시행
-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제2항,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교육 공간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조치사항 철저히 검토 후 추진 필요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 선정

※ 건강상의 문제로 실습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 비교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 교육 이수결과 관리

- (1) ‘학교 내 자체 연수대장’ 기록
  - (가) 심폐소생술 담당자는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이수현황을 자세히 기록·보관(이수관련 대장, 기타 증빙자료는 반드시 기록관리)

(나) 관리대장 기록(예시)

번호	성명	연수 과정명	연수기관명*	시작일	종료일	연수시간
1	000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소방안전본부	2000.0.0	2000.0.0	4

- \* 연수 기관명: 교육을 실시(등록부 관리)한 기관명 작성
- ※ 참고로 제시된 학교 내 관리대장이며, 학교 내 기존 관리대장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2) ‘학교 자체’ 추진 연수
- (가) 심폐소생술 연수 담당자는 등록부, 교육 내용 및 시간, 강사카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기록·보관
- (나) 등록부(예시)

<b>2022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록부(예시)</b>				
교육 일시/장소 : 2000. 0. 0. 14:00 ~ 17:00 / 00학교 강당				
연번	학교명	성명	서명(이론)	서명(실습)
1	00학교	000	000	000

- (3) (외부기관 연수관리)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교육내용, 시간 및 강사 등에 대한 사항 확인 후 자체보관

**나. 소아당뇨(제1형 당뇨) 학생에 대한 지원·관리체계 강화**

-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 ※ (학교)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교육청) 학교별 소아당뇨 학생 현황(인원) 제출받아 소아당뇨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시 활용하고, 학생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 금지
- 기 보급된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참고사항**

-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정부 지정 응급처치 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지정된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0. 3. 1.] [광주광역시조례 제5370호, 2020. 3.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4. “응급장비”란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용 장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응급처치 활동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활동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3.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4.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5. 응급처치 활동 지원 예산
6. 그 밖에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응급처치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의 설치 안내)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응급장비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응급장비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구청장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한 각급 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정기점검
2.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위치 및 사용 안내

3.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

4. 응급의료지원센터,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②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사용된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응급처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응급장비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70호, 2020.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보건 보고사항

- 건강검진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 건강검진기관 선정 현황
-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 표본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식 표본학교(44교)
- 보건교육 및 교과 선택 현황
- 학생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 언론취재] 보고

## 2023년 학교보건 보고 목록

순번	보고 사항	지정 서식	보고 기 한	제출 방법
1	건강검진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서식1호	'23.03.17.(금)	자료 집계
2	건강검진기관 선정 현황	서식2호	'23.05.12.(금)	
3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서식3호	'23.04.14.(금)	
4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서식4호	'23.12.15.(금)	
5	표본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식 표본학교(44교)	NEIS	'23.07.14.(금)	NEIS
6	보건교육 및 교과 선택 현황	서식5호	'23.12.08.(금)	자료 집계
7	학생건강증진 교육 추진 현황	서식6호	'23.12.08.(금)	
8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서식7호	'23.12.15.(금)	
9	감염병 발생에 따른(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서식8호	발생 시 유선통보 후 공문보고	

## 건강검진기관 선정 승인 요청서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	승인완화요청사항 (해당란에 ○×)		초				중1		고1	
					1		4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1개 기관선정	출장검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검진기관 승인 완화 요청 내용 및 사유(자세히 기술)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사유를 자세히 기술												

\* 출장검진 : 검진기관이 출장검진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검진하는 경우

\* 출장검진 승인 요청 학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 건강검진기관 선정 현황

### 1. 일반검진 의료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의사명	최초검사 실시(예정)일	계약 월/일	치과포함여부

### 2. '별도계약' 구강검진 의료기관

기관명	주소	연락처	의사명	최초검사 실시(예정)일	계약 월/일	비고

\* 일반검진의료기관에 구강검진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구강검진기관 별도

## 소아당뇨 등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

### □ 소아당뇨 학생 재학 및 지원현황(23.4.1 기준)

#### 1. 재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 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보건교사 미배치교 재학 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중					
고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학생 현황

#### 2. 학교의 지원현황

○ 전체현황 (단위 : 명)

구분	소아당뇨 학생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초			
중			
고			

※ 어느 형태든 학교의 지원을 받거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는 모두 포함, 지원항목은 아래의 지원항목별 설명 참조

○ 학교급별, 지원항목별(단위 : 명) (※중복표기)

- 초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중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 고등학교

구분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지원 항목>

- 1) 직접주사 : 보건교사가 인슐린 주사를 직접 투약
- 2) 주사보조 : 학생이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때 주사행위 지도
- 3) 투약장소 제공 : 보건실 등 별도 공간에서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
- 4) 혈당체크 : 보건교사 등이 직접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해 줌
- 5) 인슐린보관 : 학교에서 인슐린을 보관하여 줌
- 6) 글루카곤 보관 : 학교에서 글루카곤을 보관하여

□ 희귀난치성 질환 등 건강장애 학생 현황( '23.4.1 기준)

1. 희귀난치성 질환

○ 재학현황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2. 석션(기도흡인)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3. 인공도뇨 (단위 : 교, 명)

학교급	재학 학교수	학교의 지원을 받는 학생수	보호자가 지원을 요청한 학생수	보호자의 지원요청 대비 지원 학생수*
초				
중				
고				

※ 보호자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학교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수

4. 난치병 학생 지원을 위한 현황 조사

학년	반	이름	성별	KCD코드	질환명(한글)

※ 희귀질환목록(질병관리청 분류기준) 참고

##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건강검진 (신체발달상황, 구강검진 포함 / 단위 : 교,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전체 학교수	건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2. 초등학교 구강검진 (단위 : 교, 명, 천원)

학년	전체 학교수	구강검진 미 실시 학교수	전체 학생수		검진완료 학생수		검진소요 비용 합계
			남	여	남	여	

※ 구강검진만 실시한 학년의 내용 작성

### 3. 별도검사 (단위 : 명, 천원)

학교급	학년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전체인원	검사인원	소요비용

## 2023학년도 보건교육 및 교과 선택 현황

### 1. 보건교육 실시현황

구분	학교 급별	전체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학교수	보건교사에 의한 보건수업 현황							학년도 단위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실시 학교 수 <sup>②</sup>	보건교사가 17차시 이상 보건수업 실시 학교 수 <sup>③</sup>	
				보건과목 선택 학교수	학급당 보건수업 시수 (해당학년 보건수업 총시수÷해당학년 학급수) <sup>①</sup>								평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육청명	초												
	중												
	고												
	특수												
	계												

① 보건교사에 의한 학급당 보건수업 시수 : 보건교사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한 연평균 학급당 보건수업 평균 시수

② 학년도 단위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 정규교육과정에서 1개 학년 이상 연간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수

③ 보건교사가 17차시 이상 실시 학교 수 : ex)5학년 8차시, 6학년 9차시 이상 실시 시 8+9=17이므로 0



## 학생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 1.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단위 : 교)

구분	전체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마약류								
흡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 예방교육 미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 2. 건강한 체중관리(저체중 및 비만 예방)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3. 구강관리 교육(단위 : 교)

전체 학교수				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현황

### □ 교직원 교육 실시현황

#### 1. 교육이수자 현황(단위 : 교, 명)

구분	교육실시 학교수	교육대상 인원1)	교육이수 인원2)	미이수 인원	미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 1) 매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한 인원/ 전출 및 휴직 등의 사유로 교육결과 제출시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은 교육대상 인원에서 제외
- 2) 교육계획에 포함된 교육대상 중 실제 교육을 이수한 교직원의 수 / 교육계획 수립 이후 전입, 복직한 교직원의 이수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 2. 교육실시자(강사) 현황(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학교 내 자체교육 실시 학교수	학교 내부 강사활용 학교			외부기관 강사 초빙 학교		
		보건교사	체육교사	기타 교직원	소방서 등 공공기관 소속	민간기관 소속	기타 (개인활동 강사 등)
초							
중							
고							
특수							

※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 3. 외부기관 위탁 실시현황(단위 : 교) ※ 중복표기 가능

구분	외부기관 위탁교육 실시 학교수	교육청 (연수원 포함)	공공기관	의료기관	대학
초					
중					
고					
특수					

※ 학교 내 자체교육과 병행한 학교도 작성 대상

## [감염병명] 발생에 따른 [조치현황/언론취재] 보고

< '22. 00. 00(), 000 학교 >

### ◆ 보고시기

- 감염병 발생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 교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긴급 방역조치, 언론보도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 ※ 법정·비법정 구분 없이 모든 감염병 대상

### ◆ 보고방법: 서면보고 원칙

- ※ 사안에 따라 시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보고 후 서면보고

### ◆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청 → 교육부

### □ 학교현황

학교명	소재지	학교규모		담당자(성명/연락처)	비고
		학생수	교직원수		

### □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현황

※ 작성예시, 보고 내용 및 서식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역학조사 실시일	감염병명	발생인원			나이스 보고일 * *	보건소 신고일 * *	다음 역학조사일
		환자수	직업	학년/반(인원수) *			
'23.1.10.	결핵	1	학생	2-1(1)	'22.1.3.	'22.1.3.	'22.1.25.
'23.1.12.	백일해	30	학생	1-1(10)	'22.1.3./ '22.1.11.	'22.1.11.	미정
'23.2.22.	결핵	1	교원	2-3 담임(1)	해당없음	'22.2.21.	미정

\* 교직원의 경우 직급, 담임 여부, 교과목 등을 기재

\* \* 동일 감염병에 대하여 반복하여 보고(신고)한 경우 최초 보고(신고)일과 최종 보고(신고)일 기재

### □ 역학조사 결과보고

역학조사 실시일	조사단계 (최초/ 중간/최종)	조사자현황			조사결과	비고 (또는 조치사항)
		직업	학년/반	조사인원		
'23.1.10.	최초	학생	2-1	30	결핵: 0명 잠복결핵: 3명	지표환자가 속한 반
		학생	3-1	3	결핵: 0명 잠복결핵: 1명	지표환자와 같은 동아리 소속
		교원	2-1 담임	1	결핵(의심): 0명 잠복결핵: 0명	지표환자 담임
'23.1.12.	중간	학생	1-1 3-1 4-1	15 2 1	'22.1.3./ '22.1.11.	환자가 발생한 학급/ 환자의 형제
'23.2.22.	최초	학생	2-3	24	결핵: 0명 잠복결핵: 3명	지표환자의 학급 학생

### □ 기타 특이사항

- (학부모 설명회 개최, 민원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 □ 언론취재 상황

- (취재일, 취재언론사, 취재내용, 언론사에 대응한 담당자 등 기재)

## 참고자료 및 지정서식

- 학생건강검진 승낙서
-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 2023년 학생건강검진 비용
-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
- 문진표(초등학생용)
- 문진표(중·고등학생용)
-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 학생건강기록부
-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 보건교사 2인 배치학교 업무분장(안)
- 2023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안)
- 법정 감염병 신고의무자 및 감염병 종류

【참고자료 1】

학생건강검진기관 계약 관련 서류 간소화방안으로 마련한 ‘학생건강검진 승낙서’에 대한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작성된 서식(안)으로 학교 필요에 따라 검진기관 계약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학생건강검진 승낙서

학생검진기관으로서 아래 계약내용,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 검진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낙합니다.(계약서 작성 생략)

<input type="checkbox"/> 검진기관		(전화번호: _____ )	
병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원장성명	(인)

<input type="checkbox"/> 계약내용			
계약건명	20 년도 ○○학교 학생건강검진		
1인당검진비용	1학년	4학년	4학년 비만학생
검진대상	1, 4학년 학생    명 중 방문학생		
검진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검진완료일	20    년    월    일
계약보증금	계약금액(검진대상인원*검진비용)의 10%		
지연배상금	검진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매1일마다 청구금액(검진인원*검진비용)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계약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검진기관의 학생건강검진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 검진기관은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적절한 의료장비를 사용하여 학생 개인별로 정밀하게 실시한다.
-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검진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학교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진결과를 판정, 기재한다.
- 검진결과 통보: 검진기관은 건강주의, 질환의심 또는 유소견자의 경우 치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검진학생에 대하여 학생건강검사(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검진기관이 보관, 1부는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 1부는 학교로 통보한다.
- 검진기관 준수사항
  - 검진기관은 검진실시에 앞서 검진에 필요한 일반검진문진표, 구강검진문진표, 검진안내서(검진장소, 검진시간, 검진절차 및 검진 시 유의사항 등) 등을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부
  - 검진기관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반드시 충족하고 검진업무 수행
  - 검진기관은 흉부방사선 검사를 위한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사본을 비치하고, 검진장비에 대한 정도관리 철저
  - 무자격자(의사가 아닌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의 검진행위 금지
  - 검진결과 통보시기 준수
  - 학생의 인적사항, 검진자료 등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검진통계자료 보안관리 철저
- 사고책임: 검진기관은 학생 건강검진에 따른 제반 의료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는 검진기관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기타 비용: 검진기관은 학생건강검사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고,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 검진비용의 청구·지급: 검진기관은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참고자료 2】 건강검진 항목 및 방법(제5조제2항 관련)

검진항목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가. 시력측정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결막염, 눈썹찢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가. 청력	1) 청력계 등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귀를 각각 구별하여 검사
	나. 귓병	중이염, 바깥귀길염(외이도염) 등 검사
4. 콧병		코결골염(부비동염), 비염 등 검사
5. 목병		편도선비대·목부위림프절비대·갑상샘비대 등 검사
6. 피부병		아토피성피부염, 전염성피부염 등 검사
7. 구강	가. 치아상태	충치, 충치발생위험치아, 결손치아(영구치로 한정한다) 검사
	나. 구강상태	치주질환(잇몸병), 구내염 및 연조직질환, 부정교합, 구강위생상태 등 검사
8. 병리 검사 등	가. 소변	요컵 또는 시험관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요를 채취하며, 시험지를 사용하여 측정(요단백·요잠혈 검사)
	나. 혈액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으로 채혈하여 다음의 검사 1) 혈당(식전에 측정한다),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및 간 세포 효소(AST·ALT) 2) 혈색소(고1 여학생)
	다. 결핵	흉부 X-선 촬영 및 판독
	라. 혈압	혈압계에 의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9. 허리둘레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
10. 그 밖의 사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하는 항목(검진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 다음 각 목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사 또는 진단은 해당 목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 위 표 제8호나목1) 및 같은 표 제9호의 검진항목: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비만인 학생
  - 위 표 제8호나목2)의 검진항목: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 위 표 제8호다목의 검진항목: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위 표에서 정한 건강검진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진항목 외의 검진항목에 대한 검진방법 및 건강검진 결과의 판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참고자료 3】

검진수가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2023 1. 1. 시행) 참고

항 목	초 1		초 4		중 1		고 1			
							남		여	
	일반	일반	비만	일반	비만	일반	비만	일반	비만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척추 형태(척추 측만증 검사) Adam's bending test, scolimeter - 눈(시력, 안질환) - 귀(청력, 귓병) - 콧병, 목병, 피부병 - 신장, 체중, 비만도(BMI) - 허리둘레(비만학생에 한함) - 혈압 측정 - 결과통보 및 입력 등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9,030	
구강 (치아상태 및 구강상태)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7,990	
병 리 검 사	소변(노단백, 뇨잠혈)	780	780	780	780	780	780	780	780	
	혈액(비만학생) - 혈당, AST, ALT - 총콜레스테롤, HDL, 중성지방	-	-	16,980	-	16,980	-	16,980	-	16,980
	혈색소(고1 여학생)	-	-	-	-	-	-	-	1,050	1,050
	결 핵 검 사 (촬영)	14"×14"	-	-	-	8,320	8,320	8,320	8,320	8,320
		14"×17"	-	-	-	8,640	8,640	8,640	8,640	8,640
CR* or DR		-	-	-	6,960	6,960	6,960	6,960	6,960	
Full PACS		-	-	-	7,890	7,890	7,890	7,890	7,890	
계	14"×14"	17,800	17,800	34,780	26,120	43,100	26,120	43,100	27,170	44,150
	14"×17"				26,440	43,420	26,440	43,420	27,490	44,470
	CR or DR				24,760	41,740	24,760	41,740	25,810	42,790
	Full PACS				25,690	42,670	25,690	42,670	26,740	43,720

\* 결핵검사 : CR-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

【참고자료 4】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항목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검사항목	측정단위	검사방법
키	센티미터 (cm)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높이를 측정
몸무게	킬로그램 (kg)	옷을 입고 측정한 경우 옷의 무게를 뺄 것
비만도	-	1. 비만도는 학생의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계산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kg/m <sup>2</sup> )를 성별·나이별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에 대비하여 판정한다. 2. 비만도의 표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5 미만인 경우: 저체중 나.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85 이상 95 미만인 경우: 과체중 다. 체질량지수 백분위수 도표의 95 이상인 경우: 비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정상

※ 비교 : 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나타낸다(측정값이 소수 둘째자리 이상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참고자료 5】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부모님(보호자)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리는 편이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한 편이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소리가 난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순환기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할 때 몹시 숨이 차다.		
소화기	배가 자주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답답하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머리가 자주 아프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이나 허리가 아프다.		

**【참고자료 6】 문진표(중학생·고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작성하되 5번 문항 및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1.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 치료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병원에서 진단 받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4. 학생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걱정되거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최근 한 달간 학생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나타나는 증상	예	아니오
전신상태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호흡기	재채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숨 쉴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쉼쉼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기침과 함께 누런 가래가 올라온다.		
	열이 많이 나면서 목이 따가울 때가 자주 있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막힌다.		
	코를 심하게 곤다는 말을 듣는다.		
순환기	목에서 몽우리가 만져진다.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운동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배가 팽팽하거나 가스가 찬 것 같다.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나 설사를 자주 한다.		
혈액	코피가 자주 나고 다치면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		
	몸에 멍이 잘 든다.		
그 밖의 증상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귓속이 아프거나 귀에서 분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턱관절이 아프거나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		
	목·허리·무릎 등이 쭈시거나 아프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참고자료 7】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교명	학교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구분	검사항목	검사결과	구분	검사항목	검사결과	
신체발달 상황	키	cm	혈액	혈당(식전)	mg/dL	
	몸무게	kg		총콜레스테롤	mg/dL	
	비만도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mg/dL	
척추				중성지방	mg/dL	
눈	시력 측정	나안 좌: 우: 교정 좌: 우: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mg/dL	
	안 질환				간세포 효소	AST U/L ALT U/L
	귀	청력 좌: 우: 귓병		혈색소	g/dL	
콧병				결핵		
목병				수축기	mmHg	
피부병				이완기	mmHg	
소변	요단백		허리둘레		cm	
	요잠혈					
	과거병력		그 밖의 사항			
외상 및 후유증						
일반상태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검진기관명		

**【참고자료 8】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교명	학교		학년/반/번호	학년 반 번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생년월일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충치발생 위험치아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결손치아 (영구치에 한정)	①	없음	②	있음	상 ( )개 하 ( )개
구내염 및 연조직 질환	①	없음	②	있음	( )
부정교합	①	없음	②	교정 필요	③ 교정 중
구강위생 상태	①	없음	②	보통	③ 개선 요망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없음	②	유치 잔존	③ 그 밖의 치아 상태:
치주질환 (잇몸병)					
① ② ③ 있음					
잇몸출혈/비대( ) 치석 형성( ) 치주낭(잇몸과 치아 틈) 형성( ) 그 밖의 증상( )					
턱관절 이상					
① ② ③ 있음 ( )					
고등학교 추가 항목					
치아 마모증					
① ② ③ 있음 ( )					
그 밖의 치아 상태					
① ② ③ 있음 ( )					
종합소견					
종합소견			가정에서의 조치사항		
판정 치과의사	면허번호		검진일 및 검진기관	검진일	
	의사명	(인)	검진기관명	검진기관명	

**【참고자료 9】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및 관리 방안**

**학교 보건실에서 의약(외)품 사용**

- 약사(藥師)가 아닌 자에 의한 약사(藥事) 업무 수행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의 직무(의료행위)
- 학교보건실에서는 의약품 조제가 불가하며 일반의약(외)품만 사용
  - 「약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3조5호

**학교 보건실 의약(외)품 보관 등**

-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보관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분류하여 보관하고, 냉장 보관 시에는 의약(외)품 이외의 것과 분리 보관
- 의약(외)품 사용 및 보관 기준 준수
  - 의약품 보관 용기 또는 첨부문서에 명기된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 등을 준수
  - ※ 온·습도 조절, 직사광선 차단 등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 의약품의 안전관리,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에 철저
- 용기나 포장에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학교 보건실 사용 제한 의약품 수시 확인**

- 연령대별 사용 제한 의약품 확인 후 투약
  - 예) 15세 미만 소아 제한 의약품 : 케토프로펜 및 케토프로펜리신 함유 외용제, 게보린(이소프로필 안티피린 함유 의약품)
- 의약품 정보 확인 사이트 : 약품구분(전문, 일반), 부작용, 사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www.mfds.go.kr>)

**【참고자료 10】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실 시설 및 기구 소요기준**

구 분	시 설 명	면적(㎡)	소요기준	비 고
초·중·고·특수학교	보건실	66이상	학교당 1	
영역	교 구 종 목	소요기준	비 고	
1. 일반시설 및 기구 등	가. 사무용 책상·의자	학교당 1	필수	
	나.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학교당 1	"	
	다. 약장·기기보관함	학교당 1	"	
	라. 소독·멸균기	학교당 1	"	
	마. 냉·온장고	학교당 1	"	
	바. 물끓이는 기구	학교당 1	"	
	사. 순간온수기	학교당 2	"	
	아. 가습기	학교당 1	"	
	자. 수도시설 및 세면대	학교당 1	"	
	차. 냉·난방시설	학교당 1	"	
	카. 통신시설	학교당 1	"	
	타. 컴퓨터·프린터기	학교당 1	"	
	파. 칠판(환경계시판)	학교당 1	"	
2. 환자 안정용 기구	가. 침대·침구류	학교당 4조	필수 (1000명 기준)	
	나. 칸막이(가리개)	학교당 1	"	
	다. 보온기구	학교당 1	"	
	가. 비만측정기	학교당 1	필수	
3. 건강진단 및상담용 기구	나. 신장계	학교당 2	" (1000명 기준)	
	다. 체중계	학교당 2	"	
	라. 줄자	학교당 2	"	
	마. 좌고계	학교당 2	"	
	바. 시력표·조명장치	학교당 2	"	
	사. 눈가리개(차안기)	학교당 2	"	
	아. 색각검사표	학교당 2	"	
	자. 청력계	학교당 2	"	
	차. 혈압계	학교당 1	"	
	카. 청진기	학교당 1	"	
	타. 펜라이트	학교당 1	"	
	파. 긴의자(3인용)	학교당 1	필수	

	하. 상담용의자, 탁자 및 진찰용의자	학교당 1	"
	거. 혈당측정기	학교당 1	권장
	너. 김안경·김이경·비경	학교당 1	"
4. 응급처치용 기구	가. 체온계	학교당 2	필수
	나. 핀셋·핀셋통	학교당 2	"
	다. 가위	학교당 2	"
	라. 농반	학교당 1	"
	마. 가제통	학교당 1	"
	바. 스펀지통(소), 스펀지통(중)	학교당 2 학교당 2	" "
	사. 소독접시(기구받드)	학교당 1	"
	아. 드레싱카	학교당 1	"
	자. 부목	학교당 3	"
	차. 휴대용구급기구·구급낭	학년당 1	"
	카. 들것	학교당 1	"
	타. 찜질기	학교당 1	"
	파. 얼음주머니	학교당 1	"
	하. 구급처치용침대	학교당 1	"
	거. 세안수수기	학교당 1	권장
	너. 휴대용산소기	학교당 1	"
	더. 핸드드라이기 및 핸드타월	학교당 1	"
라. 세족기	학교당 1	"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가. 통풍건습계	학교당 1	권장
	나. 흑구온도계	학교당 1	"
	다. 조도계	학교당 1	"
	라. 가스검진기	학교당 1	"
	마. 먼지측정기	학교당 1	"
	바. 소음계	학교당 1	"
	사. 수질검사용기구	학교당 1	"
6. 보건교육용	가. 인체모형	학교당 1	권장
	나. 치아·치솔 모형	학교당 1	"
	다. 안구모형	학교당 1	"
	라. 인체해부도	학교당 1	"
	마. 식품모형	학교당 1	"
	바. 생식기 구조도	학교당 1	"
	사. 교통표지판	학교당 1	"
	아. 뇌모형	학교당 1	"
자. 성교육자료	학교당 1	"	

※ 3번 건강진단 및 상담용기구의 나 ~ 자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

【참고자료 11】

학생건강기록부

(앞쪽)

1.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
학교	학년	반(이수과정 / 학과)	번호	담임성명

2. 감염병 예방접종

가. 취학 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접종여부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회색질척수염(polio)						
결핵						
일본뇌염						
수두						
B형 간염						

나. 취학 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대상 감염병	학교 / 학년	접종일
일본뇌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3. 건강검사 실시현황

#### 가. 신체의 발달상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키(cm)												
몸무게(kg)												
비만도												

#### 나. 신체의 능력

구분	단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	5	6	1	2	3	1	2	3	
왕복오래달리기	회										
오래달리기-걸기 (초5~고3)	1,000m(초)	분:초	공란								
	1,600m(중·고 / 남)	분:초	공란								
	1,200m(중·고 / 여)	분:초	공란								
스텝검사	PEI	공란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cm	공란									
종합유연성 (무릎대고)팔굽혀펴기(중·고)	회	공란									
윗몸말아올리기	회										
약력	kg										
50m달리기	초										
제자리멀리뛰기	cm										
체지방률	%										
신체의 능력점수	점										
신체의 능력등급	등급										

#### 다. 건강검진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건강검진	검진일			공란			공란		
	검진기관			공란			공란		
구강검진	검진일								
	검진기관								

#### 라. 별도검사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1학년
검사일								
검사명								
검사기관								

### [참고자료 12]

### 건강조사 설문지(초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학년	반	번호	이름 :					
1-1. 취학 전에 받은 아래의 예방접종 여부(O, X)를 써 주십시오.(1학년만 해당)				2.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결핵 ( ) 수두 ( ) B형간염: 1차( ) 2차( ) 3차( )				가족의 의학적 병력	나와의 관계	질병명			
1-2. 최근 1년간(2022)받은 예방접종 내용을 써 주십시오. (1학년 제외)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접종명		접종일자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3. 최근 1년(2022)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장염			근골격계	척추측만증				
호흡기계	천식				최근 1년 이내 외상이나 사고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식품 알레르기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약물 알레르기					
눈·귀	눈병, 사시 등 안과질환			그 밖의 질환 등	당뇨병				
	중이염 등 귀질환, 청력장애				결핵				
피부	아토피 피부병				경련이나 발작(경기)				
	그 밖의 피부질환				수술한 경험				
순환기계	심장질환				입원한 경험				
	빈혈				그 밖의 질환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란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탄산음료·햄버거·피자 또는 과자를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먹는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건강한 체중 조절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두 가지 이상 말 할 수 있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사회성 및 정신 건강	차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활동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신체 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잘 정도로 운동을 한다.						생활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말 할 수 있다.	
	생활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스스로 나를 잘 조절할 수 있다.			
가정 및 학교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약물	지난 1년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약물의 본래 목적과 달리 환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TV·인터넷	가정 및 학교에서의 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기를 원하니까?					성 의식	지난 1년 동안 성에 대한 교육을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성문제에 대해 고민이 된다.		
인터넷	텔레비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본다.					기타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참고자료 13】**

**건강조사 설문지(중·고등학생용)**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건강지도에 참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학생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설문내용 중 가족 병력 사항과 개인 병력 사항은 부모님과 상의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학년 반 번호	이름 :					
1. 최근 1년간(2022) 예방접종을 받은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2.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 받거나 진단 받은 사람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접종명	접종일자	가족의 의학적 병력					
		나와의 관계					
		질병명					
		고혈압이나 뇌졸중(중풍)					
		당뇨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					
3. 학생이 최근 1년(2022) 동안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면 모두 "V" 표시를 하고 구체적인 질병명을 써 주십시오.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질병의 과거력	질병명			
최근 1년 동안	소화기계	위염, 소화성궤양	그 밖의 질환 등	근골격계	척추측만증		
	호흡기계	천식		최근 1년 이내 외상이나 사고	식품 알레르기		
		알레르기성비염, 만성 비염		약물 알레르기			
	눈·귀	시력장애		당뇨병	결핵		
		청력장애		경련이나 발작(경기)	수술한 경험		
		그 밖의 귀 질환		입원한 경험	그 밖의 질환		
	피부	아토피 피부병					
		그 밖의 피부질환					
	순환기계	심장질환					
		빈혈					
		고혈압					
	4.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란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항목	내용	예	아니오
식생활	아침은 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안전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항상 맨다.		
	청량음료·햄버거·피자 또는 과자를 거의 매일 먹는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항상 착용한다.		
	체중 조절을 위해 굶거나 약을 먹는다.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자주 있다.		
개인 위생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사회성 및 정신 건강	차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라 다른 아이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신체 활동	주 3회 이상 땀이 나거나 숨이 잘 정도로 운동을 한다.			약물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하루일과를 잘 안배하여 자고나면 개운하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가정 및 학교 생활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성	지난 1개월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지난 1개월 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다.		
	가정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환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인터넷	지난 1년 동안 친구들과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기타	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인터넷이나 게임을 매일 1-2시간 정도 한다.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한다.						

\* 학생 건강과 관련하여 학교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중·고등학교용 표본학교 건강조사표(B4용지)**

이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건강행태 및 상태를 알아보고 보건교육에 활용하며, 사전 조사를 통해 감시기관에서 감진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밀이 보장되므로 설문내용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건강보호 및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본인이 작성하되 잘 모르는 문항은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1. 학생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질환을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경우가 있으면 해당질문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의학적 병력	예	아니오	진단받은 연도
선천성 심장질환			
간질			
당뇨병			
천식			
아토피 피부염			
주의력결핍장애			

2. 학생이 최근 1년 동안 특별한 질환이나, 학교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거병력이 있으면 모두 써 주십시오. 문제에 따라서 학습 및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개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학생이 최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거나, 학교에서 음담으로 비처방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4. 일주일 동안 다음 음식을 대체로 몇 번이나 먹습니까?

음식 종류	① 먹지않음	② 1-2번	③ 3-5번	④ 매일먹음
라면				
음료수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튀김 등)				
육류(소, 돼지, 닭고기 등) 우유, 유제품				
과일				
채소(감지 제외)				

5. 다음 문항에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아침식사는 어떻게 합니다?  
 ① 거의 못 먹음 ② 대체로 못 먹음 ③ 대체로 안 먹음 ④ 거의 안 먹음  
 상을 때리기 위해 아편과 같이 경험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고르시오) ① 아무 것도 안 함 ② 식단을 조절한다. ③ 약을 먹는다. ④ 운동으로 감당한다.

표본학교 건강조사표 (중·고등학생용)

\*  통계처리 되지 않음,  비실명 통계처리 대상임.

6. 최근 한 달간 화상이 경험한 증상에 모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예	아니오
나타나는 증상		
감기에 잘 걸린다.		
온 몸에 힘이 없고 쉽게 피로하다.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제제기와 함께 코와 눈이 가렵고 맑은 콧물이 흐를 때가 있다.		
호흡기		
습관 때 숨이 가쁘면서 가슴에서 짹짹하는 소리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많다.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순환기		
운동 후 조금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숨이 심하게 차다		
혈색이 안 좋고,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소화기		
속이 쓰리거나 아플 때가 있다.		
속이 답답하거나 가득 찬 듯한 느낌이 있다.		
설사나 구토를 자주 한다.		
정신 건강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해서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미칠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낀다.		
두통이나 편두통이 심하다.		
그 밖의 증상		
귀에서 아프거나 귀에서 진물이 나온다.		
귀에서 매미우는 소리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학생) 생리통이 심하다.		
지끈까지 결핵성 질환 (예: 폐결핵, 누막염, 경부림프결절 등)에 걸린 적이 있다.		
결핵		
최근 2주 이상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고 있다.		
결핵 감염이나 환자 접촉으로 인해 결핵약을 먹은 적이 있다.		
결핵 관련		
출생 이후에 가족과 동거인 중에서 결핵에 걸렸던 사람이 있다.		
3년 이내에 반년이상 외국에 살았던 적이 있다.		
(위의 예인 경우만 답변) 그것은 어느 나라입니까?		
결핵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위의 예인 경우) 결과는 정상이었습니까?		
예방 접종		
지난 1년 이내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		
Td(파상풍) 접종을 받았다. (DTP가 아님)		

수급자 인적 사항	학교명	학년	반	번
	학번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	남여	생년월일	
7.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질문에 "V"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건강생활행동				
수면	하루 30분-1시간이상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며칠이나 합니다? ① 거의 안 했음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5일 이상	예	아니오	
및	평소에 하루 몇 시간 정도 잠니까? ① 6시간 이내 ② 6-7시간 ③ 7-8시간 ④ 8시간 이상			
시	친구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살이 찐 편이다 ⑤ 매우 살이 찐 편이다			
용	식사하기 전이나 외출 후 돌아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다. 하루에 두 번 이상 이를 닦는다.			
개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맨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이나 보호대를 착용한다.			
인	지난 1년 동안 사고나 외상 때문에 병원,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1번 ③ 2번 ④ 3번 이상			
인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루에 2시간 이상 한다.			
넛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 한다.			
가	지난 1년 동안 친구들과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정	고민이 있거나 괴로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및	가정(가족)내의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된다.			
학	지난 1년 동안 가출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교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생	학교 생활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활	술이나 담배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상	성 문제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다.			
관	진료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			
련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다.			
의	의사신생남계			
사	학교 재량란			
고	표시: 학교보건서비스 프로그램 대상임.			

[참고자료 14] 보건교사 2인 배치학교 업무분장 예시(안)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공통	보건교육 (정담당/부협조)	<b>보건교육 계획의 수립</b> - 학년별 교육과정 (성·약물오남용 예방·응급처치)교육 시수 반영 확인 - 보건교육 실시(1개 학년 이상 17차시) - 기타 학년의 비정규교육(필요시) - 교직원 및 학부모 보건교육 - 보건교육관련 보건소식지, 가정통신문 등 <b>보건계시판 관리(온오프라인)</b> <b>교과서 선정 업무 협조</b> <b>보건교육 자료의 확보 및 제작, 개발</b> <b>보건 선택교과 (중학교 선택교과 및 고교학점제 운영 시)</b> - 교과서 선정 - 교육계획, 평가계획 수립 후 연구부 자료 제출 - 필요시 학부모 공개수업 준비 - 보건교육 자료 제작 및 개발 - 선택교과 시 모든 학생 대상 생활기록부 작성(1500byte) - 창체(자율) 시 활동 주제, 특기사항 입력 <b>학생 보건 동아리 운영</b> - 동아리 운영계획 수립 - 매주 동아리 활동 구상 및 운영 후 평가 - 축제 부스 프로그램 구상 및 운영 - 생활기록부 동아리 특기사항 입력(1500byte)
	보건실 관리 (부담당/정협조)	<b>보건실 방문환자 관리</b> - 방문 학생 문진 및 건강사정 - 건강문제에 따른 의약품 투약 및 부작용 모니터링 - 보건실 내 안정실 이용 학생 증상 모니터링 - 보건실 방문 학생 활력징후 모니터링 - 병원 의뢰 여부 판단 - 병원 의뢰시 담임교사 연락(또는 보호자연락) - 보건일지 작성 및 관리 - 입실확인증 등 관리 - 입실 규정 및 출결 처리 연계 협조 <b>응급환자관리</b> - 계획 수립 및 시행 - 응급환자 건강사정 - 응급처치 및 필요시 119신고 -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교직원 연수 - 기타 응급환자 관리계획에 따른 업무 - 응급환자이송 기록지 작성 및 관리 <b>의약품 관리</b> - 보건실 방문학생의 주요 건강문제에 따른 필요 약품 파악 - 필요의약품 품의 및 신청 - 구비 의약품의 유통기한 및 관리 -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폐기 - 약품사용 기록 <b>의료기기 비품 관리 및 소독</b>
	요양호 학생관리 (정/부 함께)	<b>전교생 건강상태조사</b> - 학기 초 전교생 건강상태 조사 실시 -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면담 <b>요양호 학생 선정 및 관리</b> - 건강상태조사서를 바탕으로 건강상담 - 건강상태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 반영하여 요양호 학생 선정 - 학교생활 시 주의사항 및 의뢰서비스 관련 학부모 상담 - 요양호 학생에 대한 교직원 연수 - 요양호 학생 정기 건강상담 및 기록 - 요양호 학생 관리대장 작성

구분	업무	세부 내용	구분	업무	세부 내용
정	연간 계획 수립	<b>학교보건 연간계획 수립</b> (부의 협조를 받아 정이 최종 수립) - 보건실 운영 계획 - 학생건강검사 계획 - 요양호 학생 관리 계획 - 응급상황관리 계획 (응급처치·이송관리·심폐소생술포함) -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계획 - 감염병 예방 계획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계획 - 비만예방교육(정상체중관리) 계획 - 체형 불균형 관리 계획 - 당뇨학생 관리 계획(해당 학생 재학 시) - 보건교육 계획 <b>학교 교육과정 계획서 - 보건 부분(연구부 협조)</b> <b>학교정보공시(보건 부분) 입력</b> <b>보건관련 예산편성 및 조정</b>	부	감염병 관리	<b>감염병 예방</b> -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 예방접종 관련 업무 (신입생 예방접종내역 확인 포함) <b>감염병 발생 시 대응</b> - 발생 현황 모니터링 - 매뉴얼에 의거 유행여부 판단 -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및 나이스 보고 - 교내 감염병 관리조직의 활성화 - 보건소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 - 역학 조사 시 협조 <b>감염병 보조 인력 관리</b> <b>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 및 관리</b> <b>교직원 결핵검진 관련 업무</b> - 검진일정 조정 - 검진 실시 및 결과 안내 - 미검자 추후 검진방법 안내 <b>기타 감염병 관련 업무</b>
		<b>학생 성교육</b> - 학년별 성교육 시수 반영 확인 -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 시수 반영 확인 - 필요 시 성교육 전문강사 초빙 <b>성관련 업무</b> - 학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계획 수립 - 학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지침 수립 - 성 고충 상담원 구성 및 성 고충 상담창구 운영 - 학교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협조(교육, 회의 참석) - 성 고충 심의 위원회 구성 -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실적보고(성 관련 부분) - 교직원 성 관련 의무연수 추진(3시간) - 학부모 연수 및 가정통신문			<b>건강증진 관련 사업</b> <b>건강증진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b> - 프로그램 예산 관련 목적사업비 운영 - 관련 연수 참석 <b>비만예방교육(정상체중관리) 사업</b> <b>체형 불균형 관리 사업</b> 당뇨학생관리(해당 학생 재학 시) <b>선정시 아래의 사업 추진</b> - 건강검사 표본학교 - 건강증진학교 운영 - 아동 구강 실태조사 - 아토피, 천식 안심 학교 -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b>기타 건강증진 관련 사업</b>
	<b>학교흡연예방 사업</b> - 흡연예방사업 계획 및 추진 - 실태조사(3월 건강조사 포함 가능) - 흡연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 외부교육 인력 관리(강사초빙) · 체험부스 운영 제반사항 - 학교흡연예방사업 실적입력	<b>건강 검사</b> <b>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b> - 건강검진 실시 및 모니터링 - 병원 선정 및 안내 - 기관선정 업무 (필요 시 완화승인 요청, 학운위 상정 등) - 건강검진 실시 및 모니터링 <b>별도검사 실시</b> - 구강검사(초2,3,5,6/ 중2,3) - 소변검사(초2,3,5,6/ 중2,3 /고2,3) - 결핵검사(고2,3학년) - 일정 조정 및 실시/미검진학생 관리 <b>건강검사 결과관리</b> - 건강검진 유소견자 추후관리 - 별도검사 유소견자 추후관리 - 건강검사 관련 결과 보고			
	<b>교육청 긴급 편성 목적사업</b> - 목적사업 관련 서류 제출 및 예산 조정 업무 <b>각종 위원회 참석 (학교폭력전담기구, 성고충심의회위원회 등)</b> 보건관련 현안 조사 등 부담임 업무 (해당학교) <b>희망교실 업무 (희망시)</b> <b>생리대·현혈 사업(현재 고교만 해당)</b> <b>보건 교생실습, 교생 실습생 대상 성교육 실시</b>	<b>건강 기록부 관리</b> 건강기록부 관리 - 필요 시 인적사항 생성 - 건강기록부 수시 점검 - 학년 말 건강기록부 마감 및 상신 <b>교직원 심폐 소생술</b> 교직원 심폐소생술 계획 수립 및 실시 - 대상자 선정 및 기관선정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및 결과 관리 - 이수자 명단 관리 - 미이수자 추후 이수 방법 안내 - 교육 실적 관리 및 보고 <b>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매월)</b>			

【참고자료 15】

2023학년도 범교과 학습 주제 편성·운영(안)

범교과 학습주제	세부 주제	기준 시수 (법령·고시·지침)	편성·운영 방법 및 근거
안전 건강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51	•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편성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참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성교육	15	• 안전교육, 보건교육 등과 통합하거나 교과교육과 연계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편성 프로그램과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보건교육	(17)*	• 감염병 예방, 대처를 위한 적정시수 유지 * ( )시수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 대상 시수임
	소방 안전교육	연1회	• 안전교육 통합 운영 및 교과교육 연계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연2회	• 안전교육 통합 운영 및 교과교육 연계
	인터넷 중독교육	의무	• 안전교육 통합 운영 및 교과교육 연계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6	•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과 통합하거나 교과교육과 연계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학교폭력 예방교육	11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연계 운영하거나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과 통합 운영할 경우 시수 인정 • ‘어울림,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 실시
인성	인성교육	의무	• 도덕, 실과, 기술·가정, 정보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운영 권장
진로	진로교육	의무	• 중·고교의 경우 ‘진로와 직업’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및 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 실시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권장	• 초등통합, 국어, 사회, 도덕, 통합사회 등 관련 교과를 통해 세부 주제 통합·운영
인권	장애인식 개선교육	2	• 인권교육, 교과교육과 연계하거나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이해수업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다문화	다문화 이해교육	2	• 교과교육 연계 및 세계인의 날(5.20.)과 연계할 경우 시수 인정
통일	통일교육	의무	• 통일교육주간(5월 4주)과 연계·운영 • 도덕, 사회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독도	독도교육	권장	• 독도의 날(10.25.)과 연계·운영 • 사회, 한국사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경제·금융	경제금융교육	권장	• 사회, 실과, 기술·가정, 실용경제 등 교과와 통합·운영
환경·지속가능발전	환경·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의무	• 환경, 사회, 실과 등 관련 교과와 통합·운영

1. 범교과 학습 주제간 통합운영 및 관련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연계·운영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2. ‘범교과 학습주제와 교과 교육과정 연결 맵’, ‘범교과 학습주제 교수학습자료’는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탑재 완료(에듀넷 → 교육정책 → 교육과정 → 교수·학습 → 범교과 학습주제 → 인성교육 116번 게시물)

【참고】

범교과 학습주제의 법령, 고시, 지침 등 근거 자료

범교과 학습 주제	법령, 고시, 지침에 따른 의무실시 여부		관련 법령(약칭), 고시, 지침 등	
	세부 주제	의무여부		
안전 건강	안전 교육	생활안전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안전법 제8조 /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학교안전교육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별표2]</li> <li>•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17조</li> <li>• 지능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li> <li>• 소방시설법 제22조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li> <li>•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li> <li>•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8조</li> <li>• 가족폭력방지법 제4조의3 / 동법 시행령 제1조의2</li> </ul>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성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본법 제17조2</li> <li>• 성폭력방지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2조</li> <li>•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2조</li> <li>•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li> </ul>	
	보건교육 (최소 1개 학년)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li> <li>• 성폭력방지법 제5조 / 동법 시행령 제2조</li> </ul>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식생활법 제13조</li> <li>• 식생활교육법 제26조</li> </ul>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법 제17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 제4조</li> </ul>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 / 동법 시행령 제17조</li> <li>• 교육부, 연도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li> </ul>		
인성	인성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제10조 / 동법 시행령 제11조</li> <li>• 교육부, 연도별 인성교육 시행계획</li> </ul>	
진로	진로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교육법 제12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li> </ul>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본법 제2조</li> <li>•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li> </ul>	
인권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동법 시행령 제16조</li> </ul>	
다문화	다문화 이해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li> <li>• 교육부, 연도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li> </ul>	
통일	통일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 제8조 / 동법 시행령 제6조의2</li> <li>• 교육부, 연도별 통일교육 지원 사업 추진계획</li> </ul>	
독도	독도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도이용법 제5조 (권장)</li> <li>• 교육부, 연도별 독도교육 기본 계획</li> </ul>	
경제·금융	경제·금융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교육지원법 제4조 / 동법 시행령 제3조 (권장)</li> </ul>	
환경·지속가능발전	환경·지속가능한 발전교육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li> <li>•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 제67조</li> <li>• 환경교육법 제4조, 제10조의2(“23.3.1. 시행)</li> <li>•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 제28조</li> </ul>	



1. 의사, 한의사

2. 기타 신고의무자(감염병예방법 제12조1항)

-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 감염병예방법 제81조3항, 제12조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정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1.1. 시행))

-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동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결핵(結核), 수두(水痘),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百日咳),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증(CRE) 감염증, E형 간염

-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파상풍(破傷風),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발진열(發疹熱), 쯤쯤가무시증, 렘보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아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인플루엔자, 매독(梅毒),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6) “기생충감염병”이란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7)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8) “생물테러감염병”이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9) “성매개감염병”이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0) “인수공동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1) “의료관련감염병”이란 환자나 입상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 (12)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13)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4)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15)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 병원체 ·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16) “역학조사”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 (17)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18)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9)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학교보건 운영 관련 계획

- 1 2023 보건교육 기본계획(안)
- 2 2023 비만 예방교육 기본 및 세부계획(안)
- 3 2023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안)
- 4 2023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안)
- 5 2023 응급처치 활동 지원계획(안)
- 6 202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안)

## 근거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 2023년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 방향 안내[교육부]**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단, 보건과목 운영학교는 제외 가능)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4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보건교육의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개요

**1 목적**

-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 별 필요한 건강지식 집중교육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 수립·추진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 연수, 보건교육실 설치, 보건교사 보조인력(학교보건 인턴강사) 배치 등 지원활동 강화
- 보건교육 시 안정적인 보건실 운영을 위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2 실태

-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비만·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알레르기성질환 및 교육관련 문제가 대두
- 시력 이상·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질환(아토피·알레르기 등) 문제 대두
-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짐
-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짐으로 인한 정신건강 폐해 문제 대두

## 3 추진방향

-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세부 추진 계획

### 1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 성장단계에 맞는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 강화
  - ※ 연령대별 건강행태 변화 등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중심으로 집중교육
  - ※ < 예시 > 연령대별 건강행태 및 특성을 고려한 선택적 집중교육(안)

대상별	집중교육 영역
초등생 (초저/초고)	개인위생, 감염병, 식생활, 성교육, 음주·흡연 및 약물남용, 우울·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
중·고생	감염병, 성교육, 음주·흡연·약물예방,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 우울·스트레스·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식생활 관련 예방교육

-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 모든 학교에서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 보건교육계획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포함, 안내하고 보건교육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 관리를 강화
- 초·중·고생 건강증진 교육시간(관련법령, 지침 등)
  - 초등학교는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 이수하여야 함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220(2017.1.9))
  - 보건교과를 선택한 중·고등학교는 별도의 성교육, 금연, 응급심폐소생술, 정신건강 등을 모두 보건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보건교육 실시
  - 보건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중·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법령에서 정한 보건 교육 내용과 시수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 법령과 지침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보건교육 내용과 시수
    - ☞ 성교육 15시간(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관련법령 및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2013학년도부터 성폭력예방교육(3시간) 포함,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 ☞ 심폐소생술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교직원 :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학교보건법」 제9조2 ('16.12.20. 신설 '17.3.21. 시행)
  - 학생 : 보건교육, 안전교육 연계 등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교직원 :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이론교육(2시간) + 실습교육(2시간),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
    - ☞ 질병예방, 신종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등을 편성·운영(학교보건법, 감염병예방법)
    - ☞ 보건교육의 체계적 운영(학교보건법)
    - ☞ 마약류 및 금연·약물 오·남용예방 10시간(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별표6)
    - ☞ 교육부의 『안전교육 7대 표준안』(폭력·신변보호, 약물·사이버 중독, 응급처치영역 내용체계안) 학교 교육 계획 반영
  -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증가 및 청소년 약물중독 정신건강 등 사회적 현안문제와 관련, 교육부 지침으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되도록 시달됨.



## 2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 교육 자료 개발·보급

-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주요 건강문제, 생활환경 변화로 예상되는 문제 중심으로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 지원
  - ※ 최근 주요 건강문제 중심 우선 개발된 자료

- 구강보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건소 단위 보급(19~, 복지부)
- 고도 흡연학생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보급(19~, 복지부)
- 과몰입·과의존·중독예방 교육자료 개발·보급(19~, 복지부·과기정통부·여가부)
- '아토피·천식' 예방 초등학생용 교육자료 개발·보급(19~, 질병관리청)

- 기존 교육자료의 실효성을 분석결과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 ※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 관련 문제(과몰입·중독, 거북목·손목터널증후군, 시력·청력 저하 문제 등), 알레르기성질환 예방 등 추가
  - ※ 수업시간의 제약 없이 학교 내·외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 추진
  - \* (예시) 미국의 ASPIRE 프로그램(A Smoking Prevention Interactive Experience) : 애니메이션 이용 온라인 게임 형태의 흡연예방 프로그램으로 8가지 모듈 3.5~5시간 프로그램 → 표준교육 실시 대조군(5.8%) 보다 참여그룹(1.9%) 흡연율이 낮게 나타남
-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자료 개발 보급( 초·중·고·특수/ 2월중 보급)
-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 3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 연수대상 확대 및 연수과정 다양화
  - ※ 학생건강증진 관련 교장(교감), 담임교사, 관련교과, 신규 교사 등에 대한 연수 참여 확대
- 새롭게 부각되는 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학생건강 관련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 ※ 연수과정 개설 및 개설 예정 현황
  - 연수과정 개설 현황: 감염병 온라인 연수(중앙교육연수원), 약물오·남용 연수(식약처), 흡연예방 담당교원 온라인 연수(중앙교육연수원), 건강증진학교 온라인 연수(교육부)
  - 연수과정 개설 예정 현황 : 학교보건 활성화를 위한 보건교사 직무연수(4,10월)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지원(강사 양성 과정 70명)
- 보건교과연구회 운영(1팀), 흡연예방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3팀)
- 효율적 건강증진 교육을 위한 관련교과 간 협조 강화

- ※ 교내 학생건강 정보 및 예방교육 자료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보건·영양·체육·상담 교사 등과 협의체계 강화
- ※ 학교 내 건강증진부, 건강·안전부 등 건강교육 주관 조직·협의체 운영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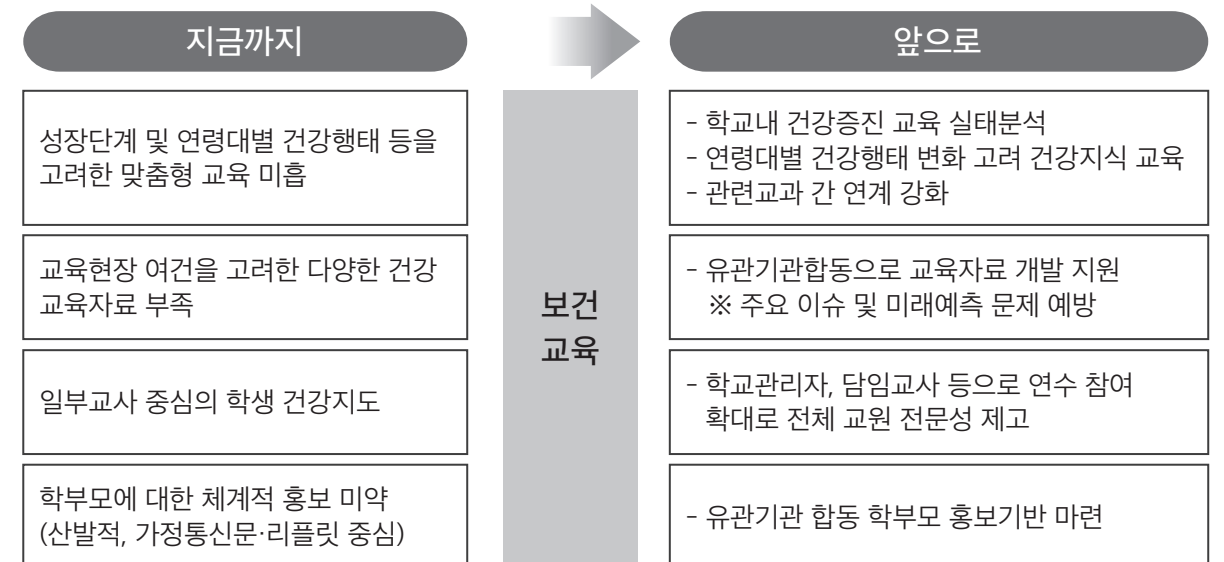
## 4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합동 홍보체계 및 지원 강화(시청, 각 구청 보건소,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 가정에서 손쉽게 예방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
  - ※ 예) 개인위생, 감염병, 식습관, 흡연, 신체활동, 시력 관리, 인터넷 사용 등
- 학교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 가정통신문 외에 학부모회의, 학교 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으로 학교 단위 홍보 방식 다양화 지원 강화
  - ※ 학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 개발 지원
  - ※ 취학 전 예비 학부모 대상 홍보
    - 가정 내 자녀건강 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 가이드라인 자료 제공

## 5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보조인력(학교보건 인턴강사) 배치(초·중·고·특수학교 130개교 지원)
-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보건수업 중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대효과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0. 9. 25.] [광주광역시조례 제5528호, 2020. 9. 2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3.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
  4.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
  5. 보건교육의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보조인력의 지원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의 연구·개발 및 평가
2. 보건교육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4.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유관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
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연구회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제 구축)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28호, 2020.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2

## 비만 예방교육 기본 및 세부계획(안)

### 추진배경

#### 1 실태 및 원인분석

실 태	원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청소년 행태조사결과 광주학생 비만율 13.9%(전국 13.5%) 과체중률 10.2%(전국 9.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률 감소</li> <li>• 불규칙한 식사(아침식사 결식률의 증가 등)</li> <li>• 패스트푸드, 라면 등의 음식 선호</li> <li>• 부족한 수면시간</li> </ul>

#### 2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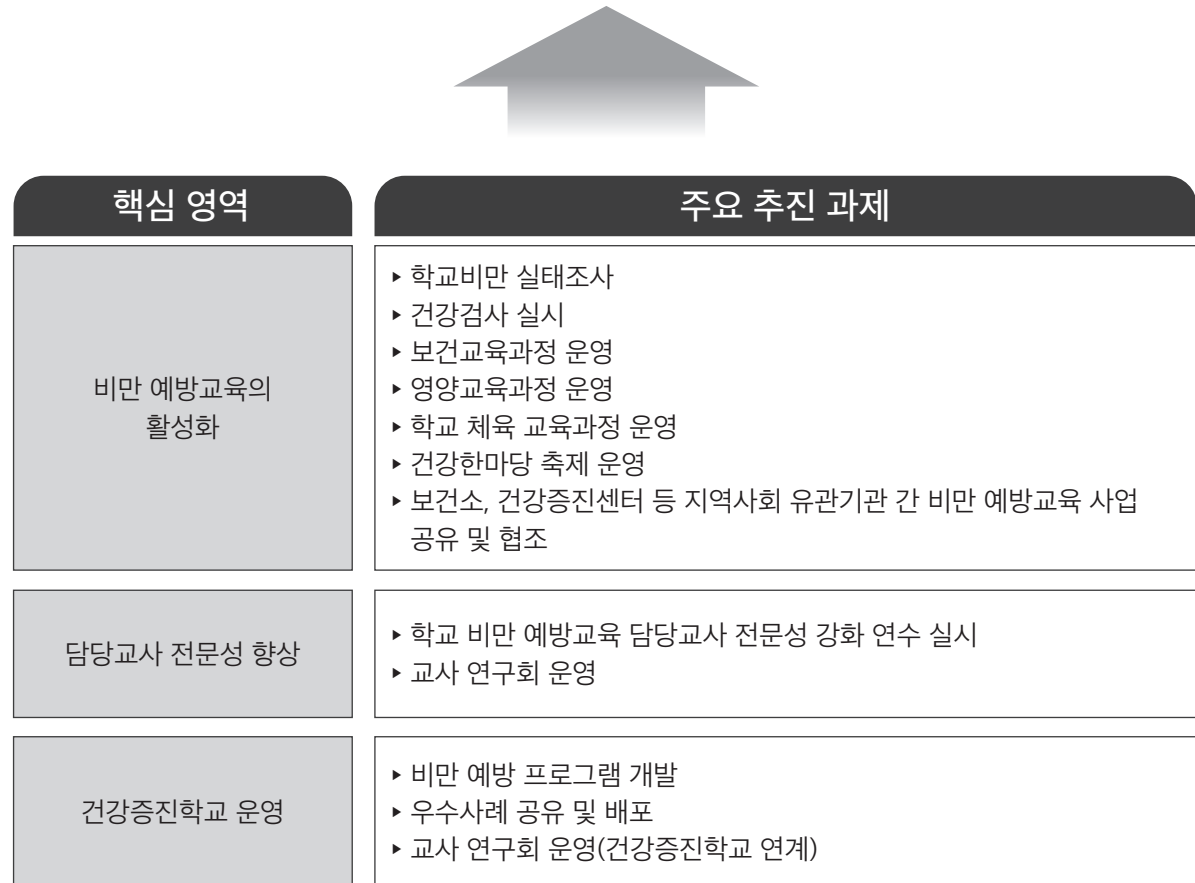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비만율 등 실태 조사</li> <li>•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li> <li>•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연수 및 홍보</li> <li>•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적정시간 확보</li> <li>• 비만 예방교육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li> </ul>

#### 3 추진 과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건강증진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li> <li>• 건강증진 학교 선정 및 운영 컨설팅</li> <li>• 학교체육 활동 운영 및 컨설팅</li> <li>• 초·중·고 비만 실태 조사</li> <li>• 학교 비만예방 교육 담당교사 전문성 강화</li> <li>• 영양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li> <li>• 유관 전문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li> <li>• 건강한마당 축제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비만 실태 조사</li> <li>• 보건교육과정 운영</li> <li>• 영양교육과정 운영</li> <li>• 건강검사 실시</li> <li>• 교과통합 수업으로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li> <li>• 자율체육활동 운영</li> <li>• 스포츠클럽활동 운영</li> <li>• 건강한마당 축제 운영 (신청학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증진학교 운영</li> <li>•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li> <li>• 교사 연구회 운영 (건강증진학교 연계)</li> <li>• 우수사례 공유 및 배포</li> </ul>

### 추진목표

비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세계 민주시민 육성
목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확산



### 근거

#### 1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2 학교보건법

제7조의2(건강증진계획의 수립)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

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의1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5.) (광주광역시조례 제5126호, 2018.11.15., 제정)

#### 중점추진과제

- 학교비만 실태 조사
- 비만 예방교육의 활성화
- 건강증진학교 운영
-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 평가 계획

-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및 결과 평가
  - 학생 비만율 현황 및 변화 추이 평가
- 제18차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를 통한 비만율 실태 및 원인분석
-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 비만 예방교육 실시현황
- 건강증진학교 운영 결과

#### 기대효과

- 비만 예방교육의 활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 건강의 틀 마련
-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
-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비만 예방교육 및 학생건강관리

## 2023 학교 비만 예방교육 세부계획(안)

### 학교 비만 실태 조사 및 건강검사 실시

#### 1 학생건강관리 강화

가. 최근 3년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광주광역시) (단위 : %)

구분	2021			2020			2019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남	여	평균
비만율	17.4	10.1	13.7	12.9	9.1	11.0	11.9	7.7	9.8

나. 학생들의 비만도는 전년대비 2.7%p 증가, 비만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 신체활동량을 증대시켜 나가는 등의 노력 필요

#### 2 학생건강검사 추진

##### 가. 기본방침

- 1)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 도모
- 2) 나쁜 건강행태 또는 건강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치료 및 보호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나. 현황

- 1) 초·중·고등학교에서는 2006년부터 개정된 「학교보건법」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라 재학생에 대한 건강검사를 실시

## 2) 학생건강검사 현황

항 목	검사 대상 (특수·각종학교 포함)	비용	실시 기관	검사 시기
신체발달 상황검사	초 2·3·5·6학년 중·고 2·3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3월~7월
건강조사	초·중·고 전학년		당해학교 교직원	학기초 (3월중)
건강검진	초 1·4학년 중·고 1학년	[참고자료 3]	학교장이 선정하는 의료기관	년 중
	초 : 전교생 구강 건강검진			
별도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실시			

## 다. 추진방향

### 1) 학교건강검사 추진

가)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하여 실시(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 학생건강검사 실시계획 수립 시 학생 건강검진기관 선정 방안(선정기준 마련 등), 검사 결과 건강이상자 최종 확인 및 추후관리, 건강검사 결과 기록 관리 등

나)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 정한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다) 학교장은 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 건강검진 및 신체발달 상황 등)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 2)

### 2) 검사결과의 적극 활용 및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가)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학교보건법 제7조의 2 제3항)

※ 건강검진 자료를 학생의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1학기 내에 검진 완료

나)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질병의 예방조치 및 치료 등의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적절한 대책 마련·추진

## 라. 검사항목

1) 신체의 발달상황 : 키·몸무게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 대상학생은 검진기관에서 측정)

2) 건강조사 :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 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교 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상담 등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거 교직원이 실시, 다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별도 문진표 작성으로 같음할 수 있음.

3) 건강검진 :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4) 별도검사 :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 마. 실시방법

### 1)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

#### 가) 검사 종목

(1) 신체발달 :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고 비만도 판정

(2) 건강조사 : 건강조사 설문지(학기초)

#### 나) 검사 시기 : 3월~7월중

#### 다) 결과 처리

(1) 신체발달 : 담임교사는 검사결과를 건강기록부(NEIS 포함)에 입력하고, 보건교사는 학부모에게 가정통신하여 적절한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2) 건강조사 설문지 : 담임교사는 설문지로 조사하여 보건(담당)교사와 협의, 건강이상자(요양호 학생) 파악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활용

##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 1 보건교육 과정 운영

### 가. 추진 근거 및 현황

1) 「학교보건법」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 실시

2)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창의적체험활동 및 보건 과목 선택운영

### 나. 추진방향

1)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초등학교는 5, 6학년 권장)은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체계적 운영

※ 일회적·형식적 교육이 아닌, 학생발달수준을 고려한 실질적 교육을 위하여 정기적인 수업시수 확보



- 나) 학교장은 학교 보건교육 계획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포함·안내하고, 보건교육 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관리 강화
- 2) 학교장은 각급 학교에서 「초·중등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가) 보건교사 수업 중 학생건강관리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나) 학교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 영양교육 과정 운영

### 가. 추진방향

- 「학교 교육활동 운영계획」에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계획’ 반영 및 실시
- 1)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과 영양, 나트륨·당류 저감화, 불량식품 근절,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등에 관한 사항 반영, 월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 2) 관련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월 2회 이상)

### 나. 교육내용

- 1) 어린이 기호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안전과 영양,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식품위생, 급식안전, 영양관리, 식중독 예방,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영양량 표시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관련교육 및 홍보
- 2) 불량식품 식별요령 및 안 사먹기, 나트륨 줄이기 등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 지도
- 3)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 시정, 질병예방을 위한 저체중,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비만학생 등에 대한 영양교육
- 4) 학생들에 대한 위생적인 배식관리와 편식교정, 식사예절 등 급식지도, 잔반 안 남기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바람직한 식생활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
- 5) 트랜스지방 제한 및 유해식품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쇼트닝·마가린 등 트랜스지방이 포함된 식품제공 최소화
  - 트랜스지방 섭취를 줄이는 요리방법 강구
    - 튀김요리는 주 2회 이하로 제한하고 식물성유지를 사용
    - 냉동·완제품 및 가공식품 사용을 자제하고 전통 식문화를 반영
    - 튀김요리보다는 찌거나 굽는 요리방법 선택
  - 부정·불량, 유해식품 매식근절을 위한 학생교육 및 학부모 홍보 실시

## 다. 교육방법

- 1)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식생활 안전교육’ 실시
- 2) 초등학교 영양 및 식생활 교육자료 적극 활용
- 3) 급식시간 전·후 시간 등을 활용한 방송 교육 및 순회교육
- 4) 가정통신문 활용, 학교홈페이지 학교급식게시판을 이용

## 3 체육교육과정 운영

### 가. 중학교 자유학년제 체육 영역 운영 내실화

- (체육수업 시수확보)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방향

※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체육 교과와 학교스포츠클럽을 활동을 동시에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 가능한 시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결정

- 다만, 학교스포츠클럽은 자유학기 활동으로 조정가능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기당 또는 학년당 전체 시수 범위 내에서 조정 \*(자유학기) 51시간 이내, (자유학년) 85시간 이내

- (자유학년제 체육프로그램 개설) 체육계열 진로 활성화, 교과 융합 등 다양한 자유학년 체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유학년 체육 영역 운영 내실화

※ (진로탐색 활동) 체육 분야 직업군 탐색 및 현장 탐방    ※ (주제선택 활동) 체육 관련 융합 프로그램 적용

※ (예술·체육 활동) 체육 활동 중심 자율과정 편성    ※ (동아리 활동) 다양한 체육 동아리 개설 및 참여 확대

- (학생 수요 고려) 학생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유학년제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설·운영
  - 사전 조사를 통한 학생의 선호 종목 및 학생 중심 활동의 자유학년제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설 및 참여율 확대
- (자유학년제 체육활동 체험 장소 확충) 체육교육협의체를 통한 지역 연계 자유학년 체육활동 체험처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
- (체육 분야 진로 탐색) 체육진로검사도구\* 활용 및 체육 진로 프로그램 수업 구성을 통해 체육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체육진로검사도구(중앙대 학교체육연구소 개발) 활용

※ e-school 체육계 진로 프로그램 적극 활용(<http://ms.e-school.or.kr/special.do>)

## 나. 고등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교내학교스포츠클럽리그 운영지원,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여학생체육활성화 선도학교, 학교스포츠클럽 고교리그 확대
  - (우수 사례 확산) 선진국 고등학교 학교체육 활동 사례 및 국내 우수사례 발굴 홍보를 통해 체육활동의 중요성 강조 및 활성화 추진
- 교육과정 내 체육 활동 확대
  - (체육수업 점검 철저) 현행 체육교과 10단위, 6개 학기 편성 및 운영에 대해 매년 2회(3월, 9월) 실제 수업운영 여부 점검 강화
  - (체육활동 확대) 고등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 및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체육활동 확대 검토

## 학교 건강증진 교육 실시

### 1 기본방침

- 가. 학교 스스로 학교의 총체적인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학부모·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학교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교 역량 강화
- 나.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생 건강증진활동 운영을 통해 학교주도의 현장중심·상향식 학교 경영시스템을 갖춘 건강증진학교 운영 활성화

### 2 현황

#### 가. 학생건강관리의 중요성 증대

- 1) 학령기(소아청소년기)는 평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 2) 소아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불건강한 습관은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짐

#### 나. 학생건강 문제의 복잡성 및 해결의 어려움

- 1) 신체활동량 부족, 영양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건강문제 야기
- 2)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사업)이 보건·영양·체육·상담 등 개별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시행

## 다. 교육부 건강증진학교 운영

- 1) '09년, 건강증진학교 국내 도입
- 2) '12~'14년, 건강증진학교 운영 확대(건강증진모델학교 85개교 운영)

### 3 추진방향

####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활동 추진

- 1)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추진
- 2) 단위학교별 건강문제를 진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 특정업무 담당자에게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참여 독려

#### 나. 건강증진 교육 실시 및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 1) 각급 학교는 학교의 건강증진프로그램(사업)에 지자체(보건소, 공공기관 등 포함), 민간단체 등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 2) 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특색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 다. 관리자 및 교원의 건강증진교육 역량 강화 지원

- 1) '중앙교육연수원'의 초·중등학교장 자격 연수과정, 일반교원 연수에 건강증진교육 관련 커리큘럼 포함
  - ※ 건강증진교육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병행
- 2) 건강증진교육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운영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사이버 연수 과정 운영·지원(중앙교육연수원 원격 교육과정 운영)

#### 라. 건강증진교육 운영 방식에 따른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보급

- 1)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보급
- 2) 우수사례 운영 학교·담당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상 등 시상 예정
- 3) 워크숍, 운영성과 발표회 등을 통한 운영 노하우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건강증진학교 일반화 추진 및 비만 예방교육관련 홍보
- 4)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를 통한 관련자료 지속 안내·보급

#### 마. 학생 건강증진 캠프 운영

- 1) 대상 : 초·중등학교 희망학생 대상



- 2) 운영 내용 : 보건, 체육, 영양 교육을 접목한 통합 프로그램을 통한 비만 및 건강증진 캠프 운영
- 3) 운영 기간 : 여름방학기간(7~8월)
- 4) 운영 인원 : 1회 40명, 3회 120명 운영 예정

- 3) 내용 : 학교보건관리, 보건교육, 감염병 예방,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 등

**평가 계획**

- 학생건강검사 추진 현황 및 결과 평가
  - 학생 비만을 현황 및 변화 추이 평가
- 제 18차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통계를 통한 비만을 실태 및 원인분석
-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 비만 예방교육 실시현황
- 건강증진학교 운영 결과

**기대효과**

- 비만 예방교육의 활성화로 학생 개개인의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평생 건강의 틀 마련
-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한 건강한 체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
-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비만 예방교육 및 학생건강관리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1 기본방침**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를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의 역량 강화 추진

**2 현황**

- 가.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건강 패러다임 변화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센터로서의 학교 기능 필요성 대두
- 나. 학교보건업무에 대한 인식 부족 : 업무분담 문제로 교직원 간의 갈등, 협력 미흡
- 다. 학생 건강문제 다양한 변화에 따른 보건 수업방법 개선 요구

**3 추진방향**

- 가. 학교보건은 보건교육, 학생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총체적인 활동이므로 효율적인 업무의 분담 및 관련 교직원 간의 협력체제 구축
- 나. 학교보건 인턴강사가 배치되지 않은 과대학교, 보건교과 선택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조치
- 다. 보건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의무제 실시
  - 1)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이 지속적·계획적으로 직무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의무제 운영
  - 2) 교원 연수 의무제는 2007학년도부터 전 교원에게 적용하며, 자율연수 및 자기개발과정의 직무연수를 제외한 전문성 향상 과정의 직무연수를 연간 최소 1학점(15시간) 이상 이수(기간제 교사 포함)
  - 3) 의료인 보수교육과 연계(연간 이수시간 8시간) ⇨ 6월 시행 예정
- 라.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 1)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신청자)
  - 2) 시기 : ‘23년 7월~8월 예정



## 광주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126호, 2018. 11.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 및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비만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비만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등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126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 거

##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2023년 학생 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교육부]

(모든 학교)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차시 이상 체계적·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단, 보건과목 운영학교는 제외 가능)

## 3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4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보건교육의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제4조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개 요

## 1 목적

-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
- 학령기 학생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별 필요한 건강지식 집중교육 지원
-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체형 예방을 위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 및 홍보

## 2 실태

-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한 시기이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길어짐
- 신체활동 부족, 바르지 않는 자세가 지속되면서 불균형 체형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최근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로 인한 불균형체형 학생들이 증가하는 경향임
-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2,3학년 흉부 X선 검사를 통한 척추측만 학생 현황

학년	성별	검진대상	검진인원	척추측만학생 수	비율
고2	남	6,883	6,552	104	1.58
	여	6,392	6,014	238	3.95
	계	13,275	12,566	342	2.72
고3	남	7,460	6,879	85	1.23
	여	6,912	6,376	235	3.68
	계	14,372	13,255	320	2.41
합계	남	14,343	13,431	189	1.40
	여	13,304	12,390	473	3.81
	계	27,647	25,821	662	2.56

## 3 추진방향

-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 학교 교육과정 내 체육활동 확대
- 불균형체형 예방 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세부 추진 계획

## 1 학생 연령대 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 성장단계에 맞는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강화
  - ※ 연령대별 건강행태 변화 등에 필요한 건강지식을 중심으로 집중교육
-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 모든학교에서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7시간 이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사항 조치
- (보건과목 운영학교) 연간 17차시 이상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과정 운영토록 필요한 사항 조치
- 학교의 장은 학교 보건교육계획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포함, 안내하고 보건교육과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도, 관리를 강화

## 2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건강 교육 자료 개발·보급

- 교육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주요 건강문제, 생활환경 변화로 예상되는 문제 중심으로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 개발 지원
- 기존 교육자료의 실효성을 분석결과 및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개발 추진
  - ※ 스마트폰·PC 사용시간 증가 관련 문제(과몰입·중독, 거북목·손목터널증후군, 시력·청력 저하 문제 등), 알레르기성질환 예방 등 추가
-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 3 교사 전문성 제고 및 관련교과 협력 강화

- 연수대상 확대 및 연수과정 다양화
  - ※ 학생건강증진 관련 교장(교감), 담임교사, 관련교과, 신규 교사 등에 대한 연수 참여 확대
- 새롭게 부각되는 건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학생건강 관련 교사연구회 지원 확대
- 보건교과연구회 운영(1팀)
- 효율적 건강증진 교육을 위한 관련교과 간 협조 강화
  - ※ 교내 학생건강 정보 및 예방교육 자료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
  - ※ 연간 교육계획 수립 시 보건·영양·체육·상담 교사 등과 협의체계 강화
  - ※ 학교 내 건강증진부, 건강·안전부 등 건강교육 주관 조직·협의체 운영 활성화

## 4 가정과 연계교육을 위한 학부모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합동 홍보체계 및 지원 강화(시청, 각구청 보건소,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 가정에서 손쉽게 예방지도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
  - ※ 예) 바른자세, 인터넷 사용 등
- 학교를 통한 학부모 교육 및 홍보 활성화
  - ※ 가정통신문 외에 학부모회의, 학교 홈페이지, 모바일 SNS 등으로 학교 단위 홍보 방식 다양화 지원 강화
  - ※ 학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 개발 지원

※ 학부모 대상 홍보

- 가정 내 자녀건강 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등 가이드라인 자료 제공

## 5 학생 신체활동 참여기회 확대

-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활성화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학생건강체력교실 운영 강화

## 6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건교사 보조인력(학교보건 인턴강사) 배치(초·중·고·특수학교 130개교 지원)
- 초등, 특수학교 보건교과서 및 지도서 보급
- 학교 실정에 따라 보건실 근접 교실 또는 보건실 내에 보건교육실 설치 등 보건수업 중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대효과

1.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
2. 학생들의 건강행태 변화를 고려한 연령대별 필요한 건강지식 집중교육으로 건강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
3.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체형 예방을 위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4. 불균형체형 예방 활동과 해소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연계로 체계적인 학생건강관리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21. 4.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670호, 2021. 4.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불균형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가 불균형인 상태(일자 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4.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 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부모 대상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위촉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670호,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4

## 당뇨 학생 지원계획(안)

### 근 거

#### 1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 3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제4조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개 요

#### 1 목적

-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
-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
- 당뇨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보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원 연수·홍보



## 2 실태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 ' 22.4.1 기준)> (단위 : 교, 명)

구분	전체학교수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재학 학교수	재학 학생수
초	153	25	26
중	93	33	43
고	68	37	78
특수	5	3	5
계	319	98	152

## 3 추진방향

-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 학생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세부 추진 계획

### 1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
-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내용이 포함된 교육 실시
-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등 교육자료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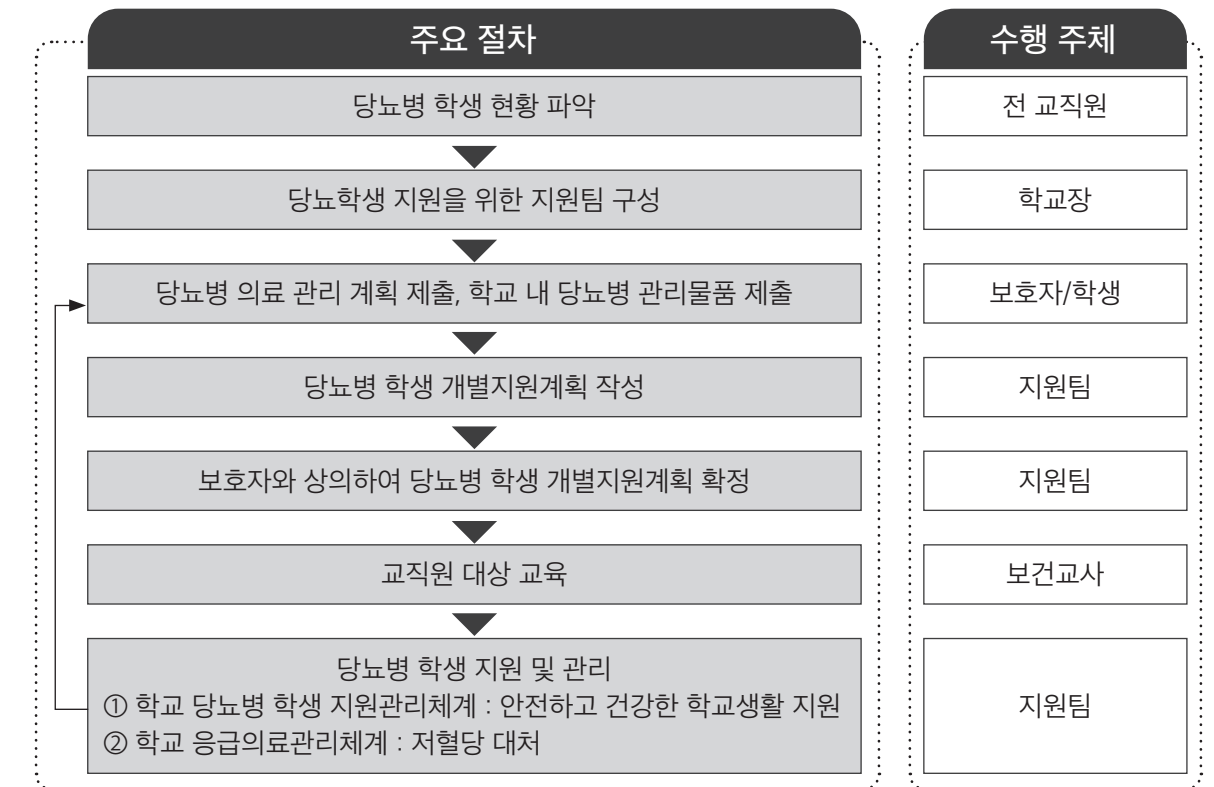
### 2 학생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 학생건강검사 추진

	대상	항목	비고
학생건강검진	초1·4, 중1, 고1, 특수학교 해당 학년	근, 골격 등 14개 항목	
학생 별도검사	초2·3·5·6, 중2·3, 고2·3 특수학교 해당 학년	소변검사, 구강검사 결핵검사	

##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당뇨병 학생 지원 절차



- 당뇨병 학생 개별 지원 컨설팅 실시
  - 혈당 측정계획(혈당측정 장소, 시간, 학생의 자기관리기술, 혈당측정기 정보)
  - 인슐린 주사 지원계획(주사장소, 시간, 용량결정, 주사투여, 주입방식)
  - 저혈당시 응급처치 계획
  - 당뇨병 관리물품 목록 및 보관장소
  - 지원팀과 교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
- 급식, 체육활동, 현장학습 시 유의사항 등 학교 구성원 공유
- 당뇨병 학생의 비밀보장과 사생활 권리 존중

### 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

- 당뇨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보조인력 지원(학교보건인턴강사)
- 당뇨병 학생에게 적용되는 국내법을 이해·준수
  - 2017년 11월 28일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제1형 당뇨병 어린이에 대한 보호규정이 마련, 저혈당 쇼크가 있을 때 당뇨병 학생에게 글루카곤 투여를 하는 내용 추가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 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 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 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기대효과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
2.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 금지 등의 보건교육으로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
3. 당뇨병 학생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가정과 학교의 연계로 당뇨병 학생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 광주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15.] [광주광역시조례 제5589호, 2020. 12. 15., 제정]

광주광역시교육청(체육예술융합교육과), 062-380-43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학생”이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2.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3.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4.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6.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7.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당뇨병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보건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3.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정보 제공
4.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혈당관리에 필요한 경우 급식시간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589호, 2020. 12. 1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05

# 응급처치 활동 지원계획(안)

### 응급처치 활동의 지원 방향 및 목표

#### 1 근거

- 「학교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 2 배경

-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미흡
-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잘못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응급환자의 상태가 더욱더 악화되는 경우 발생
- 응급처치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급하고 활성화시켜 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일차 반응자의 전문성 향상

#### 3 목표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중 구비의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의 체계적인 관리로 학생, 교직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일차 반응자의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응급환자의 방치 시간을 줄이고 2차적 손상을 예방하여 심신상에 중대한 위해 방지
-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을 지원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
-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 응급처치 활동의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

### 1 교육 협력 체계 유지

- 응급의료체계는 '현장 - 이송 - 응급실 - 최종 치료'까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중 현장에서의 초기 응급처치가 환자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직원 및 학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협조

### 2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119 등 유관 기관과 연락체계

광주광역시교육청 380-4396		광주광역시 119종합상황실 613-8084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부소방서 606-4233	서부소방서 613-8572	남부소방서 613-8608	북부소방서 613-8765	광산소방서 613-8883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대인: 606-4203 용산: 606-4243 지산: 606-4258	화정: 606-4255 염주: 606-4317 금호: 606-4330 풍암: 606-4359 상무: 606-4343	송하: 606-4370 월산: 606-4413 봉선: 606-4623	문흥: 606-4463 임동: 606-4503 우산: 606-4518 일곡: 606-4533 두암: 606-4763 동림: 606-4563	송정: 606-4643 월곡: 606-4658 비아: 606-4673 신가: 606-4688 첨단: 606-4701 평동: 606-4718

- 응급의료지원센터 연락체계

자치구	응급의료지원센터	비고
동구	▶ 전남대학교병원(220-5893) ▶ 조선대학교병원(220-3373)	
서구	▶ 미래로21병원(450-1000) ▶ 광주한국병원(380-3000) ▶ 선한병원(466-1000) ▶ 상무병원(600-7000) ▶ 서광병원(600-8000)	
남구	▶ 동아병원(650-2500) ▶ 광주기독병원(650-5000) ▶ 광주씨티병원(460-7000)	
북구	▶ 해피뷰병원(519-9000) ▶ 운암한국병원(608-8000) ▶ 광주현대병원(570-0336) ▶ 광주병원(260-7000) ▶ 광주일곡병원(608-7013) ▶ 광주희망병원(608-6000)	
광산구	▶ 신가병원(610-8702) ▶ 광주열린병원(610-9000) ▶ KS병원(975-9000) ▶ 광주수완병원(958-1110) ▶ 송정사랑병원(949-9000) ▶ 하남성심병원(953-6000) ▶ 광주보훈병원(602-6021) ▶ 첨단종합병원(601-8084)	

##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 1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 적극 반영
  -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계획에 따라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
  - 학년단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 강화
  - 보건교육에 포함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며,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중학교는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방법 적극 검토·추진
- 심폐소생술 실천 사례 발굴
  - 심폐소생술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대상자를 격려함으로써 심폐소생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을 제고
  - “학생건강정보센터 홈페이지(www.schoolhealth.kr)”의 심폐소생술 사례 메뉴를 활용하여 실천 사례 접수

### 2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학생의 안전 확보

-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대체) 가능
    - 수학여행 안전요원(신규,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 이수
    - 안전교육 등 직무연수 시 심폐소생술 실습(2시간)을 포함한 과정이 있는 경우
    - 기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관련 연수 이수(자격증 및 수료증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시)
  - 학교장은 모든 교직원이 매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31일까지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 당해 연도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29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
  - 외부 강사, 교육기관을 통한 대면 실습교육 시, 교육 공간의 면적, 환기 유무 등 방역 조치사항을 철저히 검토 후 추진

○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 하고 있는 사람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
- 보건교사(간호사)의 경우,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소지자, BLS(Basic Life Support) Provider, BLS(Basic Life Support) Instructor, 교육청 주관 응급처치전문요원 연수 이수자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를 할 수 있음
- 일반 교직원의 경우, 강사 다)항에 해당되는 경우 강사로 활동 할 수 있음

○ 강사요원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개설(추후 공문 시행)

○ 교육결과 처리(모든 학교 해당)

- 교육 이수결과 관리 : 학교별 이수자는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2023학년도 교직원 심폐소생술 관리대장(예시)>

관리 번호	성명	연수 과정명	연수기관명		연수 실시일	연수 시간
			학교자체	외부기관명		
1	000	심폐소생술 교육				
교육대상인원		명	교육이수 인원	명	미이수인원(사유)	

※ 참고로 제시된 예시는 학교 내 관리대장이며, 학교 내 기존 관리대장 서식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학교 자체' 진행 연수는 증빙자료(내부결재)를 반드시 기록·보관

※ 증빙자료 : 등록부,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카드 등

2023학년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등록부(예시)				
교육 일시/장소 : 2023. 4. 1. 14:00 ~ 17:00 / 00학교 강당				
연번	학교명	성명	서명(이론)	서명(실습)
1	00학교	000	000	000

- 특수 분야 직무연수 지정기관에서 연수 이수한 경우, 운영기관에서 나이스 등재
- 매년 교육대상이 전체 교직원으로 변경되어 개별 나이스 등재는 입력하지 않음

### 3 응급장비 사용 교육 실시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해당 기관에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실적 자체 보관(광주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활동 지원 조례 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응급장비의 유지·관리 방안

### 1 응급장비 설치 안내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건물 입구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
- 건물 내부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유도 안내판 설치

###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운영

- 설치기관의 관리자 (이하 '설치기관의 장 등') 역할
  - 응급장비 설치 후 신고서 제출 [→ 관할 시·군·구(보건소)]
  -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건, 인력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 이상 (정·부) 지정
  -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업무는 직접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설치기관의 직원 중 관리 책임자 지정 필요



- 기관 내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및 원칙 수립
- 관리책임자의 정기적인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등) 참여 보장
- 설치기관 내 직원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 실시

○ 관리책임자의 역할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는 아래 사항을 담당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계기관의 점검 시 이를 열람토록 하는 등 협조하여야 함

- 장비관리

-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사용 가능토록 관리
- 본체, 부속물 및 보관함 등의 청결 및 손상상태 확인 및 조치
- 내용연수 및 적정 사용횟수 경과 후 장비 교체여부 판단(장비마다 각기 다르므로, 해당 장비 매뉴얼 및 제조사항의 권고에 따르되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부속 및 장비 교체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
- 도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일 점검

- 사용내역 관리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해당 사항 지체 없이 통보
- 사용 후 적절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리뷰 실시

- 사용법 숙지 및 사용자 교육

-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계획 수립, 운영 및 보고
- 비상 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유지 (관리책임자 및 119, 주변의료기관 등)

○ 소요 예산

- 교육용 마네킹 및 자동심장충격기 학교 예산 지원 예정(2023년 상반기)
  - 교육용 마네킹 구입비 지원 예산: 179,000천 원(500천 원×358대)
  -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지원 예산: 295,000천 원(500천 원×590대)
- 심폐소생술 연수 지원 예산: 24,800천 원(강사인력풀위탁운영비, 강사수당 등)
  - 2023년 10~11월 중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세부 계획 수립·추진 예정

3 응급장비 관리 안내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이용 점검 등록

1. 응급의료정보제공(E-gen)(<http://www.e-gen.or.kr>) 별도 로그인 버튼 클릭

2. 점검 관리 기능 로그인 화면

3.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목록

4. AED 장비정보·점검이력 및 사용이력 구분

5. 점검이력 메뉴: 점검일자 등록 및 점검이력 검색 및 선택 화면



○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이용 점검 등록

※ 점검이력 화면구성 및 등록·검색 방법은 모바일 앱(app) 사용법과 동일

1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LOGIN,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2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관리 기능 로그인. 관리번호 또는 장비연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로그인. 관리번호/비밀번호 문이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 바랍니다. 관리를 위한 시스템 메뉴 및 설치기관 배포 양식 다운로드

3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국립중앙의료원] 11-000\*\*\*\*.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7). 최근점검일 : 2017.07.28 | 최근사용일 : -. 본관1층 로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7). 최근점검일 : 2017.07.28 | 최근사용일 : -.

4 장비정보, 점검이력, 사용이력, 통합응급의료 메인. 일반정보: 장비연번호 11-0006\*\*\*\*, 설치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관리책임자 송\*\*\*\*, 전화번호 02-2260-\*\*\*\*, 설치유형 장비부착 고정형. 위치정보: 설치장소 본관1층 로비, 설치장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최근 점검정보: 점검일 2017-07-28, 점검자 송민지.

5 장비정보, 점검이력, 사용이력, 통합응급의료 메인. + 점검일지 등록. 점검일자 2017-07-01 ~ 2017-08-01. 검색

① 통합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portal.nemc.or.kr) 별도 로그인 버튼 클릭  
 ② 점검 관리 기능 로그인 화면  
 ③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목록  
 ④ AED 장비정보·점검이력 및 사용이력 구분  
 ⑤ 점검이력 메뉴: 점검일지 등록 및 점검이력 검색 및 선택 화면

【참고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자동심장충격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있음	이상없음
1	장비정보	제조사 :	
	장비유지기간	제품명 또는 모델명 :	
	설치위치	제조번호 :	
		제조 연월일 :	
		장비구매일자 : 년 월 일	
		본체유효사용가능기한 : 년 월 일	
		교체예정일자 : 년 월 일	
1	본체 작동 상태 확인		
	① 전원 표시 상태등 점멸		
	②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 패드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③ 건전지 충전 상태		
	• 건전지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2	본체 및 부속물 청결 및 손상상태		
3	보관함 상태		
	①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② 보관함 각종 안내문구상태		
	③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④ 사용자 매뉴얼 및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책자 여부		
	⑤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표시 여부		
4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① 기관(건물) 입구 안내 표시		
	② 기관내 설치 위치 및 방향 표시		
5	지난 1개월간 사용실적 여부(있을 경우 추가 기재)	있음	없음
	•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각 : )		
	• 사용자 :		
	• 사용내용 :		
6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7	관리자 변경사항	있음	없음
	① 관리자 이름 :	관리자 전화번호(비상연락처) : 000-0000-0000	
8	장비 사용 가능 시간		
	① 24시간 이용 가능	② 24시간 사용 불가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절한 위치에 두고 전원을 켜다.
  - ② 두 개의 패드를 기계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부위 피부에 단단히 부착한다. (환자의 옷은 벗기고,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
  - ③ 자동심장충격기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접촉을 피하고 기다린다.
  - ④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심장충격 에너지를 충전하며, 이후 '제세동(심장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 버튼을 누른다.  
\* '심장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분석시, 그 즉시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
  - ⑤ 제세동(심장충격) 시행 후에는 지체 없이 가슴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 [참고] 자동심장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충격의 필요성을 판단하므로, 환자에게 패드를 부착한 상태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심장충격)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한다.

## 06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안)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하고자 예방 및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및 목표

#### 1 근거

- 「학교보건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2 목표

-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병 이환 예방
- 학교 내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신속히 함으로써 유행 확산 방지
-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또는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시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

### 추진 방향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비와 함께 감염병 발생 시 유행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일선에서부터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갖춘 체계적인 대응
-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와 기관별 역할 구분
  - 대응체계를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으로 구분
- 감염병 대응 체계 범위의 확장과 감염병 대응 조직의 강화
  - 대응체계를 감염병의 예방단계에서부터 복구단계까지 세분화

- 학교의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및 활용 가능성 향상
  - 유행단계별 업무흐름도 및 판단 기준, 교육청 감염병 관리 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
  - 등교 중지, 휴업, 휴교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 학교의 대비 및 대응

### 1 예방단계

- 상황: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 내용: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체계 구축(조직 구성, 계획 수립) 및 예방 활동 수행
  -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 예방접종 관리: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능력의 향상
  - 수동감시 체계 운영: 감염병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감염병 발생단계 업무 흐름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
  - 방역 활동: 방역물품 비축, 방역(소독) 실시
- 예산액: 컨설팅비 등 1,780천원

### 2 대응단계(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

단계	상황	시작 시점	종료 시점	후속 조치
대응 제1단계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유증상자 발견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	⇒ 대응 제2단계
			감염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	⇒ 예방단계
대응 제2단계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 (의심)환자 존재	의료기관 진료 결과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을 확인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	⇒ 대응 제3단계
			기존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예방단계
대응 제3단계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추가 (의심)환자 발생 확인을 통해 유행의심 기준 충족	기존의 모든 (의심)환자가 완치되고 추가 (의심)환자가 미발생	⇒ 복구단계

### 3 복구단계(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 유행종료 판단과 보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 유행 종료 기준
  - 학교 내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름
- 사후조치 실시
  - 수업 결손 보충
  - 심리 지원
- 유행 종료 선언: 예방단계로의 복구

## 교육행정기관의 대비 및 대응

단계	학교 상황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교육부
예방 단계	평소수준*	수동감시체계 운영	수동감시체계 운영	수동감시체계 운영
		-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 구축	교육부 학생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 구축
		협조체계 구축 (보건소)	협조체계 구축 (시·도 보건업무 관련 부서)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대응 제1단계	감염병 유증상자 존재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
대응 제2단계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은 감염병(의심)환자 존재	시·도 교육청 보고	교육부 보고	-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
대응 제3단계	1개 교육기관 「유행의심」 상황	시·도 교육청 보고	교육부 보고	-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	-
	관내 교육기관 「유행의심」 상황 추가 발생	시·도 교육청 보고	교육부 보고	타 시·도 교육청 정보 제공
유행 확산	「학교유행경보」 발령 검토 요청	「학교유행경보」 검토 및 발령	-	
	협조체계 강화 (보건소)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 운영	교육부 학생 감염병 전문가 자문단 구축	
복구 단계	유행종료	감시체계 강화 해제	감시체계 강화 해제	-
		「학교유행경보」 해제 검토 요청	「학교유행경보」 해제	감시체계 운영

\* 학교 내 감염병이 없거나 감기 혹은 단순한 설사 등 특이사항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경우

### 1 지역 유행 감시체계 구축과 운영

- 관내 학교의 「유행의심」 상황 발생을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함
-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시 강화
  - 교육부에 「유행의심」 학교 발생과 감시 강화 조치 보고
  - 감시 강화 지역의 모든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에 상기 내용을 전달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보고를 독려함.
  - 학교 별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현황을 산하 교육지원청 보고 및 나이스(NEIS)를 통해 매일 파악함.
  - 「학교유행정보」 발령 필요성 검토 요청 : 동일 감염병의 「유행의심」 학교가 추가 발생한 경우 검토함

### 2 「학교유행경보제」 운영

- 관내 학교의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대응하여 전파 차단
- 관내 학교에 대한 능동감시 결과 최초 발생 학교를 포함하여 2개 이상 교육기관에서 「유행의심」 상황이 확인된 경우 「학교유행정보」 발령 검토
  - 시·도 교육청은 「학교유행정보」를 발령하고 교육부에 보고함.
  - 교육지원청은 「학교유행정보」를 지역 내 학교에 전파함.
  - 해당 학교들은 학교 내 감시를 수동에서 능동으로 전환하고, 보건교육과 가정통신문 발송 등 다양한 대응조치를 실시함.

### 3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감염병 관리 협의체 구성과 운영

구분	구성
교육청	교육청 담당자
학교	학교 현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방역당국	시청 보건업무관련부서, 감염병관리본부 등
민간전문가	소아청소년과/감염내과/정신건강의학과/예방의학/교육 전문가 등

- 교육청 단위 학생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수립 시 협의체 구성
- 교육청 단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지역 내 유행발생 학교에 대한 기술자문 지원(역학조사, 휴업 및 휴교 결정 등)

-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단위에서 보건(담당)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함.
- 평상시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주관하여 실행함.
- 관내 학교에 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함.
- 「유행의심」 학교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함.

### 4 감염병별 역학적 특성과 관리 방안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sup>1)2)</sup>	잠복기 <sup>3)</sup>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sup>4)</sup>	마스크 착용
A형간염	피로감, 발열, 오한, 복부 불쾌감, 오심, 구토	임상증상 시작되기 2주전~황달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 1주일	황달 증상 이후 7일간(황달증상 없으면 입원일로부터 7일간)	15-50일 (평균 28일)	○	○	X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수막염, 후두개염, 폐렴, 관절염 등	항생제 치료 후 48시간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4일	○	○	X
B형간염	피로감, 식욕부진, 감기증세, 황달, 근육통	일상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60-150일 (평균 90일)	X	X	X
C형간염	피로감, 식욕부진, 감기증세, 황달, 근육통	증상 나타나기 1주~수주일 전부터 전파 가능	등교 중지 안 함.	15~150일	X	X	X
감기균	발열, 기침, 객담 등 호흡기계 증상	이환기간 내내	등교 중지 안 함.	병원체마다 다양(보통 2-14일)	X	○	○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 감소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수년까지 가능 (50% 2년 이내)	○	○	○
공수병	공수증, 불안감, 두통, 발열, 중추신경계증상	이환기간 내내	이환기간 내내	20-90일 (평균 30-60일)	X	○	X
급성 출혈성 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4일-1주일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8-48시간	○	○	X
급성 출혈열균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출혈 경향	병원체마다 다양	이환기간 내내	병원체마다 다양 (부록 참조)	○	○	○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권태감, 발열	급성기부터 설사가 멈추고 48시간 후까지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24-48시간 (평균 33시간)	○	○	X
뇌수막염	발열, 두통, 구토, 의식 저하	병원체마다 다양	병원체마다 다양	병원체마다 다양 (부록 참조)	○	○	○
덴기열	고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14일 (평균 4-7일)	X	X	X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sup>1)2)</sup>	잠복기 <sup>3)</sup>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sup>4)</sup>	마스크 착용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조류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이 있는 동안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3-10일 (평균 7일)	0	0	0
두창 (천연두)	고열, 허약감, 오한, 두통, 반점, 구진상 발진	발열 시작부터 피부 병변의 모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피부 병변의 모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12-24일 (평균 7-17일)	0	0	0
디프테리아	발열, 인후와 편도 발적, 인후 부위 위막, 림프절 종대	치료받지 않는 환자는 감염 후 약14일간,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 후 1-2일	14일 간의 치료가 끝날 때까지	2-6일	0	0	0
라임병	유주성 홍반,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30일	X	X	X
레지오넬라증	폐렴형(발열, 오한, 마른기침), 독감형(권태감, 근육통, 발열, 오한)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0일 (평균 10일)	X	X	X
렙토스피라증	대부분 가벼운 감기증상, 5~10%에서 황달, 신부전 등의 중증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4일 (평균 5-7일)	X	X	X
말라리아	주기적인 오한, 발열, 발한 후 해열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17일 (평균 15일), 6~12개월	X	X	X
발진열	발진, 발열, 오한, 근육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6-18일 (평균 10일)	X	X	X
발진티푸스	오한, 고열, 두통, 근육통	몸이 또는 머릿니가 있는 경우	몸이 또는 머릿니를 제거할 때까지	6-15일 (평균 7일)	0	0	X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2주간 전염력이 높으며 증상 발생 4주 후에는 전염성이 소실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7-20일 (평균 5-10일)	0	0	0
보툴리눔 독소증	뇌신경 마비, 대칭적이며 하부로 진행되는 이완성 신경마비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72시간	X	X	X
브루셀라증	발열, 발한, 두통, 요통, 위장관계, 골격계, 신경계 증상	성접촉을 제외한 일상 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2-4주	X	X	X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감염 전 기간 동안 가능하며 대개 며칠에서 몇 주	등교 중지 안 함.	6시간-10일 (평균 6-48시간)	0	0	X
성홍열	미만성 구진,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오한 및 인후염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1-3일	0	0	0
세균성이질	발열, 복통, 구토, 뒤무직을 동반한 설사	발병 후 4주 이내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12시간-6일 (평균 2-4일)	0	0	X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sup>1)2)</sup>	잠복기 <sup>3)</sup>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sup>4)</sup>	마스크 착용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수포가 생기기 1-2일 전부터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10-21일 (평균 14-16일)	0	0	0
수막구균성 수막염	두통, 발열, 경부 경직, 오심, 구토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항생제 치료 시작 후 24시간까지	2-10일 (평균 3-4일)	0	0	0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닥 및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발병 후 7일간이 가장 전염력 강함, 피부 병변(수포)에 가피가 생성될 때까지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3-7일	0	0	0
신증후군 출혈열	발열, 오한, 근육통 → 저혈압 → 핏뇨 → 이노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3주	X	X	0
요충증	항문주위 가려움증, 굵은 부위 발적, 종창, 습진	치료를 통해 모든 충체를 제거하기 전까지	등교 중지 안 함.	1-2개월	0	X	X
웨스트나일열	두통, 식욕감퇴, 근육통, 구역, 구토, 발진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2-14일	X	X	X
유비저	국소 감염, 급성 폐렴, 만성 화농성 감염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21일, 수년까지 가능	0	X	X
유행성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발병 후 14일까지	격리없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권장	5-7일	0	0	X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 발생 3일전부터 발생 후 5일까지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14-25일 (평균14-18일)	0	0	0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5일까지	유행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	1-4일 (평균 2일)	X	0	0
일본뇌염	고열, 두통, 현기증, 구토, 복통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7-14일	X	X	X
장관 감염병균	발열, 복통, 구토 등 소화기계 증상	이환기간 내내	등교 중지는 의미없음	질환마다 다양	X	0	X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복통, 수양성 설사, 혈성 설사, 발열, 구토	발병 후 1주(최대 3주)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2~8일	0	0	X
장티푸스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 → 변비	이환기간 내내 (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3-60일 (평균 1-3주)	0	0	X
중동호흡기 증후군	발열, 기침, 호흡곤란, 두통, 오한 인후통	이환기간 내내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2-14일 (평균 5일)	0	0	0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sup>1)2)</sup>	잠복기 <sup>3)</sup>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sup>4)</sup>	마스크 착용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급성 호흡기 증상	주로 증상이 발현되는 기간 동안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	치료가 종결되고 더이상 전염성이 없다고 판명될 때 까지	2-10일 (평균 4-6일)	0	0	0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고열, 구역,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6일-2주	X	X	X
진드기매개뇌염	발열, 권태감, 근육통, 오심, 구토 → 신경계 증상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4-28일 (평균 8일)	X	X	X
쯔쯔가무시증	고열, 오한, 두통, 피부발진, 가피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8-11일	X	X	X
콜레라	수양성 설사, 복통, 구토, 팔다리 저림.	대변 검체에서 양성인 기간 (보통 회복 후 며칠정도)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검사가 음성일때까지	6시간~5일 (평균 2-3일)	0	0	X
큐열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복통	성접촉을 제외한 일상 생활에서는 전파되지 않음	등교 중지 안 함.	3-30일	X	X	X
크로이츠펠츠-야콥병	아급성 진행성 치매, 근경련, 기억력과 공간 지남력 장애	사람 간 전파는 매우 드물	등교 중지 안 함.	수개월-수년	X	X	X
탄저	피부탄저(구진, 수포성 궤양), 폐탄저(호흡기 증상), 장탄저(소화기 증상)	이환기간 내내	이환기간 내내	1일-60일 (평균 1일-7일)	0	0	0
파라티푸스	고열, 복통, 두통, 구토, 설사 → 변비	이환기간 내내(보통 수일에서 수주까지)	항생제 치료 종료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3회 대변검사가 음성일 때까지	1-3주	0	0	X
파상풍	경부경직, 연하곤란, 근육수축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1일-수개월 (평균 3-21일)	X	0 (개방성 상처인 경우)	X
페스트	림프절형(오한, 발열, 근육통), 폐렴형(오한, 발열, 기침, 객담), 패혈증형(오심, 구토, 설사)	이환기간 내내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1-6일	0	0	0
페렴구균	폐렴(고열, 오한, 객담, 기침), 급성중이염(귀통증, 이명, 두통)	불명확(호흡기 분비물에 균이 존재하는 동안)	모든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1-3일	X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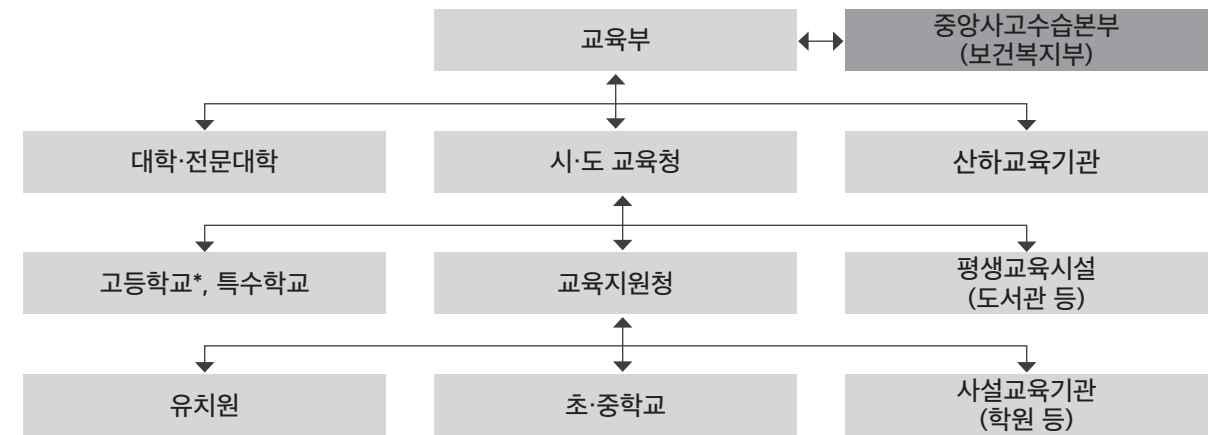
감염병	임상 증상	전염 가능 기간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격리) 기간 <sup>1)2)</sup>	잠복기 <sup>3)</sup>	밀접 접촉자 파악	일시적 격리 <sup>4)</sup>	마스크 착용
폴리오	발열, 권태감, 인후통, 뇌수막염, 이완성 마비	바이러스 노출 후 3-6주까지	입원 후 매주 채취한 대변 검체에서의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 결과가 2회 연속 음성일 때까지	7-14일	0	0	X
풍진	구진성 발진, 림프절 종창, 미열, 등 감기 증상	발진 생기기 7일 전부터 생기기 후 7일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7일까지	14-23일 (평균 16-18일)	0	0	0
한센병	나종형(소결절, 구진, 반점, 미만성 침윤), 결핵형(몇개의 피부병변, 말초신경염)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	치료시작 후 3개월까지	3-5년	0	0	X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발진 발생 4일 전부터 발진 발생 5일 후까지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7-18일 (평균 10-12일)	0	0	0
황열	발열, 두통, 권태감 → 10~20%에서 신부전, 간부전, 황달	사람 간 전파 없음	등교 중지 안 함.	3-6일	X	X	X

- 1) 전파차단을 위한 등교 중지 기간으로 관련 질환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의 환자 격리 기간을 바탕으로 작성함.
- 2) 등교 중지 기간은 휴일을 포함
- 3) 감염 시작 시점부터 증상과 징후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
- 4)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병 의심 학생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 격리하여 관찰하는 것

## 국가의 감염병 위기상황 시 대비 및 대응

### 1 관련 정보 전파 체계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산하 교육기관에 관련 정보를배포



\*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학교에 정보를 전파함.

## 2 교육행정기관 대응조직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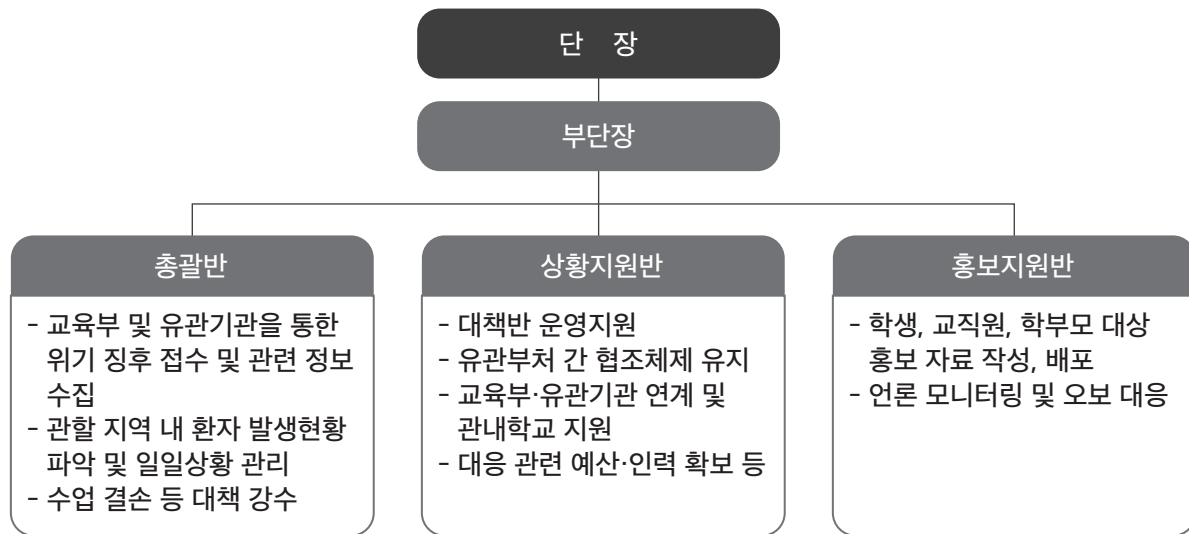
### ○ 대응조직 구성

- 위기경보 단계별로 대응조직을 구성함

단계	운영	단장(지휘관)	
		교육부	시·도 교육청
관심(Blue)	필요 없음	-	-
주의(Yellow)	구성	학생건강담당국장	교육국장
경계(Orange)	확대	학교정책실장	부교육감
심각(Red)	확대	교육부 차관	교육감

\* 감염병의 종류와 확산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국가위기 상황 시 교육청 대응 조직



※ 상황과 여건에 필요시 분할·편성하여 운영

## 3 국가위기 단계별 대비 및 대응

### 가. 예방단계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평상시	없음	일반적 대비 / 대응체계 구축

### ○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을 구성
- 방역당국(시·도 보건업무관련부서/지역 감염병관리본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

### ○ 소통채널 구축

영역	세부 항목	교육부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대응체계 구축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작성/배포	배포	배포	-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	구성	구성	-	-
	방역당국 협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구축 (시·도 보건업무관련과 / 감염병관리본부)	구축 (보건소)	구축 (보건소)
소통채널 구축	학부모 대상 소통채널	구축	협조	협조	협조
	언론 대상 소통채널	구축	구축	-	-

### 나. 국가위기 제1단계 : 관심(Blue)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해외 신종 감염병 발생 (세계보건기구 :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없음	•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국내의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산발적	• 구체적 대응 방안 검토 • 징후 감시 활동(필요시)

### ○ 대응체계 구축

- 방역당국(시·도 보건업무관련부서/지역 감염병관리본부)과의 협조체계를 점검
- 교육지원청 및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의 현황(방역물품)을 파악하도록 요청
- 국가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주관하여 실행. 단, 평상시 모의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감시체계 운영

- 감시체계의 운영 방안과 해외 출·입국자 관리 방안을 산하교육기관에 배포

### ○ 각종 예방 활동 강화

- 해당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행동수칙, 학교용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 다. 국가위기 제2단계 : 주의(Yellow)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세계보건기구 : '감염병 주의보' 발령)	해당 지역	•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환자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실시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대응체계 운영

- 시·도 교육청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여부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학교에 대한 보건인력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

**보건인력 지원 방안(예시)**

- 보건인력의 한시적 지원(시·도 교육청 단위)
  - 지원 대상 : 보건교사 미배치교, 과대학교 및 감염병 환자수가 많은 학교
  - 지원 자격 :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우선으로 함.
  - 배치 방법 : 해당 감염병과 수행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
- 보건(담당)교사 역량 강화
  - 시·도 교육청 단위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

○ 감시체계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은 필요시 감시를 강화
  - 대상 지역 :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가 발생한 지역으로써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에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지역
  - 강화 지역 : 교육지원청 단위(동일 지역 고등학교를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할 수 있음
  - 실시 방법 : 시·도 교육청이 감시 강화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함.
  - 결과 보고: 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 교육청 → 교육부
-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정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

○ 전파 차단 / 예방 활동

- 환자 발생 지역
  -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음
  - 산하 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의 준수사항을 안내

○ 위기소통채널 확보 및 운영

- 신속·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의 교환으로 대내외 신뢰 구축
- 유관기관 간 양방향 소통 채널 운영을 통한 위기상황 조기 극복

- 시·도 방역당국, 언론과의 소통채널을 확보

-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

**라. 국가위기 제3단계 : 경계(Orange)**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	해당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체제 가동</li> <li>•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li> <li>• 환자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및 대응 강화</li> </ul>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따른 지역 전파		

○ 대응체계 운영

- 시·도 교육청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
- 필요 시 환자 발생 지역에 보건인력을 지원
- 교육지원청 및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방역물품 등)의 보급을 지원

○ 감시체계 운영

- 환자 발생 지역은 감시를 강화
  - 대상 지역: 해외 신종 감염병 또는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지역
  - 강화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동일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성과 유행 상황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축소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 단위로 확대할 수 있음
  - 실시 방법: 시·도 교육청이 감시 강화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
  - 결과 보고: 학교→교육지원청→시·도 교육청→교육부
- 환자 미발생 지역은 예방단계(정상시)의 감시수준을 유지

○ 전파 차단 / 예방 활동

- 환자 발생 지역
  -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의 실시를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실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음
  - 산하 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

○ 휴업 및 휴교의 검토

- 특정 지역에서 학교 내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 교육감은 교육부의 휴업/휴교 지침을

바탕으로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할 수 있음

○ 위기소통채널 운영

- 시·도 방역당국, 언론과의 소통채널을 운영
-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

○ 각종행사 운영

- 환자 발생 지역
  - 산하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의 연기나 취소를 요청하고,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경우 단체활동의 금지 명령을 검토
  -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의 실시를 검토
  -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하여야 함
  -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 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
- 환자 미발생 지역
  - 산하 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 자제 요청

마. 국가위기 제4단계 : 심각(Red)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해외 신종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전국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역량 총동원</li> <li>• 범정부적 협조체계 강화</li> <li>• 전국으로 감시 및 대응 강화 확대</li> </ul>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 대응체계 운영

- 시·도 교육청의 대책반을 확대 운영
- 관내 지역에 감시 강화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감염병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응방안을 검토

○ 감시체계 운영

- 대상 지역: 전체 지역
- 실시 방법: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는 「학교유행정보」 발령에 준하여 감시를 실시
- 결과 보고: 학교→교육지원청→시·도 교육청→교육부

○ 전파 차단 / 예방 활동

-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을 지시하고 실시 결과를 모니터링 함.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실시
- 산하 교육기관에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지시

○ 휴업 및 휴교의 검토

- 국가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교의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휴업 또는 휴교 명령을 할 수 있음. 이 때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 자문조직의 검토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

○ 위기소통채널 운영

- 시·도 방역당국과 소통채널을 강화
-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자제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따름
-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학부모 대상 소통채널을 활용

○ 각종행사 운영

- 전국의 산하 교육기관에 수학여행, 체험 학습, 수련 활동 등 학생 및 교직원이 참여하는 단체행사의 연기나 취소를 요청하고, 필요시 전면적 금지 명령을 검토
- 취소된 단체행사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검토
- 각종 행사의 취소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권고 사항,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의심)환자 감시체계와 발견 시 대응방안 등을 마련 후 진행
- 병원 등 보건·의료계열의 현장실습을 자제하도록 요청

바. 복구단계

판단 기준	학교 내 발생 가능성	대응
유행 종료	산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및 보완</li> <li>• 복구</li> <li>• 감시 활동 유지</li> </ul>

○ 대응체계 평가

- 대책본부 운영 종료 및 대응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

○ 복구활동

- 교육(지원)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심리지원 관련 자료를 전달
- 휴업 또는 휴교 및 수업 결손 현황을 파악하고 자체 대책을 마련

소요 예산액

○ 소요 예산액: 6,361,000천원

- 학생 감염병 예방 관련 컨설팅비 1,780천원
- 학교방역활동인력 지원금 6,359,220천원
  - ※ 1학기(21개월) 예산 우선 편성, 감염병 확산세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학기 운영 여부 결정, 세부추진계획 별도 공문 시행

본 자료의 내용은 광주광역시교육청(<http://www.gen.go.kr>)  
⇨ 자료마당 ⇨ 체육예술융합교육과 ⇨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